

법제교류 연구 10-15-□-7

가 ODA

- -

박 광 동

가 ODA

- -

A study on ODA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 Introductory Report

연구자 : 박광동(부연구위원)
Park, Kwang-Dong

2010. 10. 29.



국문 요약

우리나라는 ODA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2010년 7월 시행),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개발원조정책의 국제적 동향으로는 첫째, 오늘날의 개발원조의 목적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빈곤삭감이라는 특징과, MDGs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ODA의 양의 확대와 질 향상이라는 특징일 것이다.

그리고, 주요선진국의 ODA에 대한 개관을 통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서도, 경제·재정 사정의 변화에 의해 정책은 변화한다고 해도, 이념이나 기본적 목적까지 요동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원조정책의 이념·기본 목적을 우선 확립해야 한다.

둘째, 원조는 기본적으로 피원조국과의 관계로 어떠한 체제가 바람직한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의회에 의한 마이크로매니지먼트는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같은 형태의 개발전략의 선택과 같은 일까지 관료에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넷째,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도, 원조와 국익의 직접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소리가 있지만, 경제·재정사정은 급변하는 것이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민간단체에 의한 원조의 확산과 GNI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우리나라도 경제·재정사정을 고려하여 타겟으로 하는 국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경제·재정 사정에 따른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DA평가제도와 관련하여서 개발원조에서의 모니터링제도와 평가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 : , , , ,
ODA

Abstract

In November 25, 2009, Korea became 24th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In addition, Korea enacte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enforcing in July 2010)as basic law of ODA and is seeking for various measures for the performance of effective and systematic ODA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uitable support system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y expending non-restrictive aid.

The points to be considered in Korea for deliberation of such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specific provisions for foreign aid are needed in terms of legislati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enforced in Korea have a lot of room for interpretation due to the abstract provisions. Of course, the necessity of these detailed provisions have relevance to the issue of the social situation and the legislative policies. Nevertheless, the specific legislation concerning the purpose of ODA performance,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partner countries and the ODA evaluation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consistent maintenance and efficient enforcement of ODA policies through cooperations, checks, and mediation between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

Second, the consistence of policies about the performing agencies and the promotion of strategy considered the effectiveness of aid are needed in the long term. The creation of exclusive organizations for foreign aid such as USAID can be considered ideally.

Third, the supporting system and policies for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are necessar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about private sector such as NGO are needed at the national level. In Korea, specific laws for support of NGO activities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on't exist yet.

Fourth, the measures for efficiencies of ODA evaluation system are required. First of all, experiential learning, transparency, deepening of 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are chosen as the detailed purposes of ODA evaluation. And then, the establishment of the detailed evaluation system such as general particulars about management of performan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s(PMP), performance indicators for PMP and the measures concerning the evaluation procedures, the evaluation methods, the assessment documents and the evaluation results needs to be considered.

※ Key Words : OD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DA Legislation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대상국가의 선정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대상국가의 선정	12
제 2 절 연구의 범위	15
제 2 장 연구대상 주요국가의 ODA법제의 현황	17
제 1 절 미 국	17
제 2 절 벨기에	19
제 3 절 스웨덴	20
제 4 절 오스트리아	21
제 5 절 일 본	23
제 3 장 연구대상 국가별 법제	27
제 1 절 미 국	27
제 2 절 벨기에	30
제 3 절 스웨덴	31
제 4 절 오스트리아	32

제 5 절 일 본	34
제 4 장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평가제도 ...	37
제 1 절 미 국	37
1. 정 책	37
2. 미국의 ODA 시행 사례	42
3. 평 가	44
제 2 절 벨기에	45
1. 정 책	45
2. ODA 시행 사례 : 아동 권리	50
3. 평 가	50
제 3 절 스웨덴	51
1. 정 책	51
2. ODA 시행 사례 : 기후변동정책	53
3. 평 가	54
제 4 절 오스트리아	55
1. 정 책	55
2. ODA 시행 사례 : 개발과 인권	59
3. 평 가	60
제 5 절 일 본	63
1. 정 책	63
2. 시행사례 - 법정비지원사업 분야	72
3. 평 가	75

제 5 장 시사점	79
제 1 절 미 국	79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79
2. 평가체계의 시사점	87
제 2 절 벨기에	89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89
2.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90
제 3 절 스웨덴	91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91
2.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92
제 4 절 오스트리아	93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93
2.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94
제 5 절 일 본	95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95
2.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95
제 6 장 결 론	99
참 고 문 헌	101

제 1 장 서 론

1

가

1. 연구의 목적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즉, ODA는 ① 정부기관이 ②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또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③ 증여(Grant-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유상원조) 이다¹⁾.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10년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ODA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2010년 7월 시행),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유상·무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중을 각각 2012년까지 40%와 75%로, 2015년까지는 50%와 100%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OD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1) http://www.odakorea.go.kr/html/intro/summary_2.php?&bid=a32

적용되는 일반 특혜관세제도를 마련하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무관세 품목에 밀가루 등 251개를 추가하였다²⁾.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한국형 ODA모형을 통해 G20, OECD, UN 등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녹색ODA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국가의 ODA법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ODA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의 제시 및 이를 위한 관련법제, 즉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 시행령의 개선방안에 있어서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요국가의 ODA법제를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대상국가의 선정

(1) 미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미국의 공적개발원조도 OECD의 기준과 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에서 도입할 부분은 도입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ODA 모델’을 만들어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토대적 연구로서 미국의 ODA 정책, 법제도 및 평가체계에 대한 분석은 매우 가치가 있다. 특히 2009년 11월 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 정부는 DAC 규범과 기준에 맞는 법제의 마련과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데, 미국의 ODA 관련 법제와 정책의 시행 경험에 대한 연구는 향후 한국의 ODA 정책방향과 시행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ODA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126800020>

같이 이제 막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이 DAC의 규범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법제의 현 상태를 고려할 때, 우리 법제의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법제와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벨기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벨기에는 1961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참여한 이후 국제적 수준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이하 공적개발원조) 법제와 실행의 경험을 갖고 있다.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국민총소득 대비 0.50% (2006년), 0.43% (2007년), 0.48% (2008년), 0.55% (2009년) 수준이었으며, 2010년까지 0.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 공여대상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하여 18개 국가들이 있고, 특히 지역적으로는 중앙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대륙의 최빈국들에 집중하고 있는 바, 벨기에의 소수 국가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와 정책의 의미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의 법제와 정책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 법제의 현 상태를 고려할 때, 우리 법제의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벨기에 법제와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에 분명하다.

(3) 스웨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스웨덴은 다른 주요선진국과 같이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의 목표해인 2015년을 목표로, 빈곤의 삭감이나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 감염증대책, 평화의 구축 등의 국제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ODA예산액

수를 착실하게 늘리면서, 원조 정책뿐만 아니라 그 실시의 수법등도 포함시켜서 전반적인 ODA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국제원조 등을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 확립과 외교력의 강화 등을 추구하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ODA를 전략적·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와 정책의 의미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의 법제와 정책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 법제의 현 상태를 고려할 때, 우리 법제의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스웨덴 법제와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에 분명하다.

(4) 오스트리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오스트리아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관한 선진적 제도와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오스트리아는 196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에 참여한 이후 국제적 수준의 ODA의 법제와 실행의 경험을 갖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의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국민총소득 대비 0.47% (2006년), 0.50% (2007년), 0.42% (2008년)의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평균을 상회하는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여대상국은 이라크를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있고, 지역적으로도 전 대륙에 걸쳐 있는 바, 국제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 전 세계 빈민을 위한 개발원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에 집중하고 있는 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와 정책의 의미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 법제와 정책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기존 국내 연구 성과의 한계를 고려할 때, 오스트리아 법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는 입법과 정책에서 초보적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일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개발 경험을 다른 개발도상국 및 선진 도너국가들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원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ODA의 정책 및 법제가 우리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ODA 관련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ODA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고찰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해, 경제발달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 ODA 지원이 유기적으로 발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총론적 연구와 각론적인 연구로 구별하여, 총론적 연구에서는 주요국가의 ODA사업과 관련한 연혁, 상황, 체계 및 관련 법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주요국가의 ODA사업의 실제적인 사례의 접근을 통해 우리나라 ODA사업 수행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의 도출을 하고자 한다.

각론적 연구에서는 지역적 상황 및 ODA 수행상황과 ODA법제에 대하여 고려하여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에 대한 ODA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가의 ODA법제의 현황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1장 서론

제3장에서는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 법제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평가제도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5장에서는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장 연구대상 주요국가의 ODA법제의 현황

1

미국은 현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OECD DAC의 가장 큰 규모의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도자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재건이라는 경제적 이익과 미국의 대서방 세계에 대한 지도자적 위치 획득이라는 정치적 이익이 맞물려 도출된 결과라 할 수 있는 마셜 플랜(Marshall Plan, 1947-1951)이 개발원조라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한 직접적인 시초이다.

1961년 J. F. 케네디 대통령의 세계개발정책에 따라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을 제정하고 개발원조 업무를 담당할 정부기관으로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을 설립하였다. 또한 미국은 OECD 및 DAC를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다자간(multilateral) 개발기구(예, IBRD, IDA, UNIDO, UNDP 등)를 설립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곳에 큰 규모로 금전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대외원조를 법제화하고 담당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냉전시대부터 체계적으로 ODA를 실시해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피원조국의 필요(needs)’와 자신의 ‘외교정책의 목표’에 의하여 자국의 개발원조정책을 정당화해 왔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정부는 의회와 국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 국가안보의 논리를 더 강하게 사용하였다. 즉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발원조정책들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개발협력정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미국정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민주적인 제도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 부문(private sector) 위주의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 제도, 활성화된 시장, 인간에 투자하는 일을 포함한 선치(善治, good governance)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대상국 중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원조규모는 세계 ODA의 대략 2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ODA 회원국의 총 ODA에 규모는 약 1200억 달러이고, GNI 대비 ODA 비중은 평균 약 0.31%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규모로 볼 때 최대의 ODA 공여국이다. 2009년 미국의 ODA 지원규모는 약 28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규모 면에서는 북유럽 3국(약 114억 달러)의 2.5배 이상이지만 GNI와 대비하면 0.20%로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낮은 수준인 19위를 기록하고 있다. ODA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국은 GNI 대비 약 1.03%를 기록하여 최상위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GNI 대비 최고는 1963년 0.6%이었고 최소는 1997년에 0.09%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원국이며 무상원조 비율도 높아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분야별로 보면, 교육, 보건 및 인구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사회 인프라 분야에 지원을 하였다. 이 두 분야 이외에도 경제 인프라 분야, 채무 경감, 인도적 지원 분야 등에도 지원을 하였다.

2

벨기에는 1961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참여한 이후 국제적 수준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이하 공적개발원조) 법제와 실행의 경험을 갖고 있다.

벨기에 원조체계는 연방외무부(Federal Public Service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PSFA, 이하 연방외무부)를 중심으로 연방외무부 산하의 개발협력총국(Directorate-General of Development Co-operation, DGDC 혹은 DGD, 이하 개발협력총국)을 비롯하여 연방 및 지역 차원의 여러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원조체계를 분권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 중 개발협력각료가 이끄는 개발협력총국은 개발협력의 조직과 정책수립의 핵심으로서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의 2/3를 관리하고 있는데, 개발협력총국에 의한 정부차원에서의 개발협력은 대부분 벨기에기술협력(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BTC, 이하 벨기에기술협력)에 위임되어 수행되고 있다.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의 현 수준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9년에 국내법제를 정비하였고,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리선언에 부합하는 정책조율 및 조치를 취하는 등의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벨기에가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1999년 제정한 「벨기에 국제협력법」(Law on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인데, 이를 통해 벨기에는 현재적 차원의 공적개발원조의 확고한 법적 인프라를 확보하였다. 「벨기에 국제협력법」은 벨기에 개발협력의 목적과 원칙을 확립하였고, 공적개발원조의 중점분야, 교차분야적 중점주체들을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목적과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국민총소득 대비 0.50% (2006년), 0.43% (2007년), 0.48% (2008년), 0.55% (2009년) 수준이었으며, 2010년까지 0.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즉, 벨기에는 공적개발원조의 예산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왔으며, 현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원조에 있어 GNI 비율로는 6위, 규모로서는 14위에 해당한다. 2009년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 총액은 2004년에 비해 44%가 증가한 26억 달러에 이르며, ODA/GNI 비율은 같은 기간 0.41%에서 0.55%로 증가하였다. 특히 벨기에는 2002년 몬테레이에서 행한, 2010년까지 EU 목표인 0.51%를 상회하는 ODA/GNI 비율 0.7%에 도달하겠다는 서약을 착실히 이뤄가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벨기에 「회계법」(Law on State Accountancy)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벨기에가 그 기준을 충족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벨기에는 2010년까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여 6번째로 0.7% 기준을 충족시킨 국가가 될 것이다.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 공여대상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하여 18개 국가들이 있고, 특히 지역적으로는 중앙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대륙의 최빈국들에 집중하고 있는 바, 벨기에의 소수 국가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3

2006년도의 스웨덴의 ODA는 2005년에 비해 14.7% 증가하였고, 39억 5,5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다만, 이것에는 채무면제의 요소도 있다. 그리고, 2008년 스웨덴의 순ODA는 2007년보다 실질적으로 3.9% 증가한 미화 47억 3천만불이었다.

스웨덴은 ODA의 대 GNI비율 0.7%를 달성하여, GNI에서 차지하는 ODA 비율은 2007년의 0.93%에서 2008년에는 0.98%로 상승하였다³⁾.

3) <http://www.oecd-ilibrary.org/sites/dcr-2010-en/08/02/20/index.html?contentType=/ns/Chapter>

스웨덴은 대 GNI비율 1%를 개발협력에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해 오고 있고, 특히 2001년도 이후의 3년간의 개발협력예산은 30%가 증액되었다.

또, 스웨덴의 개발원조에 대해 NGO가 완수하는 역할이 크고, 2국간 원조의 약 18%가 NGO전용으로 거출되고 있다.

국제기관을 통한 원조의 비율은 27.9%(2006년도)이며, 1980년대까지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에 대한 원조가 국제기관을 통한 원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난민 지원에 힘을 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에 대한 원조가 증가하고 있다.

증여비율은 99.7%(2005/06년도)이며, 2국간 원조는 100%(06년도) 이다.

스웨덴의 정부개발원조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질적으로 높은 원조를 실시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평가는 높다.

스웨덴은 빈곤삭감에 초점을 맞히고 있기 때문에, 2국간 원조의 4분의 3은 최빈국으로 향해지고 있어서 2분의 1정도를 아프리카에 할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라크, 탄자니아, 모잠비크, 우간다, 에디오피아, 케냐, 수단,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보스니아가 주요한 파트너국이다. 2007년에 스웨덴은 2국간 원조의 대상국을 지금까지의 70개국에서 33개국에 구성하고 있다.

4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의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국민총소득 대비 0.47% (2006년), 0.50% (2007년), 0.42%

&itemId=/content/chapter/dcr-2010-31-en&containerItemId=/content/serial/20747721&accessItemIds=&mimeType=text/html.

(2008년)의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평균을 상회하는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연방 유럽외무부는 수혜국 및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운영기구인 오스트리아 개발청과 협력하여 계획을 설계하고, 3개년 계획을 통해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오스트리아 개발청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실무기관으로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수혜국들 내의 모든 양자 계획 및 사업을 실행하고,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을 관리한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개발은행, 연방 정부부처,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적 자금으로 국가차원의 개발원조 예산에 기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은 국제적인 틀 내에서 전세계적 빈곤을 감소시키고 평화와 인간안보를 실현하며,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정책 및 계획에는 유럽연합 및 국제위원회(유럽연합, 국제연합, 경제개발협력기구, 국제금융기관)에서 합의된 기준을 적용한다. 그 중 양대 축이 천년개발목표와 파리선언이다. 오늘날,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7개의 우선지역의 수혜국들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민주주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주로 수질관리 및 위생, 에너지, 농촌개발, 교육, 민간부문 발전, 거버넌스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연방 유럽외무부는 개발협력 전략과 계획을 발전시키고, 개발청은 이를 비정부기구, 사업체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수혜국 정부와의 협력하에 실행에 옮긴다. 12개의 해외사무소는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감독한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의 공동개발협력을 구체화하는 데에 중대한 기여를 하며, 국제연합, 국제금융기구, 개발정책포럼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5

일본은 1993년~2000년까지의 8년간을 통해서 ODA실적이 세계 1위였지만, 2001년을 경계로 감소경향에 있고, 2008년에는 제5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대 국민총소득(GNI) 비율에서는, DAC가맹국의 22개국 중 21위, 국민 1명당의 부담액에서는 20위에 위치하고 있어, 선진국 중에서의 ODA의 공헌도는 결코 높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상이다⁴⁾.

구체적으로 일본의 2008년 ODA실적은 OECD-DAC가맹국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어 제5위로 되어 있다. 2008년 ODA실적(지출순액수)의 내역으로서는 2개국간 ODA가 전체의 약71.2%, 국제기관을 통한 ODA가 약28.8%이 되고 있다. 2개국간 ODA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과의 협의를 경과해서 원조를 실시하기 위해서, 일본과 피원조국과의 관계 강화에 공헌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또, 국제기관을 통한 ODA는 국제기관의 전문적 지식의 활용,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정부 중심의 원조를 통한 대상 국가·지역에의 지원의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 그 때문에 일본은 2개국간 원조와 국제기관을 통한 지원을 유연하게 가려 쓰는 동시에 상호의 연계를 도모하고, 적절하게 원조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⁵⁾.

2010년도 예산안에서는, 일본 NGO연계무상이나 기술협력 등, NGO에 적합한 ODA프로그램에 대한 일정한 증액을 한 상황이다⁶⁾.

특히, 2010년 2월, 오카다(岡田) 외무대신의 지시로, 외무성에서 OD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였고, 검토작업의 개시 이후, 외무성 내에 마련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중심으로, 국제협

4) http://www.jica.go.jp/world/interdependence/jica_databook/11/

5) http://www.jica.go.jp/world/interdependence/jica_databook/12/

6) <http://www.tvac.or.jp/di/17874.html>

력의 이념·기본방침, 원조의 효과적·효율적 실시, 다양한 관계자와의 연계, 국민의 이해·지지의 촉진, JICA라는 다섯 가지의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듭해왔다. 또, 경제계나 NGO, 일본에 있는 국제기관의 대표자, 또 각계의 유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작업을 진행해왔다.

동년 6월에 「OD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검토 최종보고(ODA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最終とりまとめ)」를 발표했다. 이 작업은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의 충분성은 얻어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 아래에서,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재검토를 실시하여, ODA를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오카다 대신의 견해에 근거로 하여 시작된 것이다.

동 보고서에서 「국익의 증진 -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평화와 번영을 만든다」는 명확한 이념을 내세워,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중시하는 자세를 취하며, 빈곤삭감, 평화에 대한 투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 등의 중점분야를 압축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있다. 또, 일본의 「사람」, 「지혜」, 「자금」, 「기술」을 집결한 개발협력을 위해, 관계자와의 대화의 확대, 민간기업과의 연계, NGO와의 제휴를 강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원조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프로그램 어프로치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다자간 및 양자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개발인재의 육성을 위해, 개발인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 등의 확충과 NGO에 의한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등을 활발히 하고, 정책의 기획입안기능과 실시체제(JICA)의 강화를 위해, 외무성(정책)과 JICA(실시)의 역할분담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정보개시를 강화하여 폭넓은 국민의 개발협력에 대한 참가를 촉진하며, ODA의 확충을 위해, 민

간자금 및 OOF와의 제휴 등을 통해 개발자금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념 및 기본방침을 반영하기 위하여, 향후 ODA 대강의 개정을 위하여 일본 정부내 협의가 곧 시작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제 3 장 연구대상 국가별 법제

1

미국에는 현재 ODA만을 규율하는 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961년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FAA)이 미국의 대외원조 시행관련 제반 법적 요건(statutory requirement)을 포괄하고 있다. Kennedy 정부는 대외원조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재편하고 당시 지적되었던 원조구조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외원조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미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이 경제공황과 경제붕괴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고,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들 국가들이 이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이 이루진 것도 아니고, 위기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 또는 단기간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자금이 피원조국의 경제적 안정을 이끌지도 못했다는 반성에서 제정된 것이다.

1961년 당시 대외원조법은 경제적·정치적 원칙들을 담은 비교적 간단한 문서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개발원조는 두 가지 정책, 즉, 경제적 자원을 개발하고 생산역량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과 정책을 고조시키는 것과 후진국들에 대한 기술적 협력 및 개발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종합해보면, 1961년 대외원조법은 기존의 대외원조정책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에 의한 대외원조계획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 개발계획 메카니즘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제정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대외원조법은 1961년 9월 4일 미국의회가 군사적 원조와 비군사적 원조를 구분하여 미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재조직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이다. 따라서 대외원조법은 미국의 개발원조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ODA의 법적 기반은 대외원조법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상세한 법률을 두고 있다. 이 법은 거의 매년 수정되고 있다.

1961년 법제화된 대외원조법은 어떻게 원조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약이 거의 없고, 단지 원조 제공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에⁷⁾ 관한 일반적 규정들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대외원조법은 거의 매년 수정이 되어, 지금은 방대한 규정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대외원조법을 수정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시 새겨 불만한 내용은 1988년 말 외교위원회(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FAC)의 대외원조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Hamilton-Gilman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 ① 대외원조는 미국의 안보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 도구이다.
- ② 국가들의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성은 미국이 좋든 나쁘든 세계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그리고 국제적인 의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적 사건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하지만 대외원조정책들이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미국의 대중적 지지는 아직 강하게 남아있지만, 대중들은 현재의 정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리고 대중들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대외정책 수단으로써의 원조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7) 예를 들면, 피원조국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조치의 정도 등.

- ④ 대외원조에 관한 입법과 행정부가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가치에 대하여 대중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대외원조법에는 너무나도 많은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방향으로의 원조가 불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기도 힘들다.”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너무 많은 분야에 자금 책정, 보고 요구 및 “어떻게 원조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 보다는 그저 어떻게 원조가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예측에 더 초점을 두는 행정부서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원조정책이 너무 많은 국가에 너무 많은 계획으로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정책, 안보정책, 개발정책이 거의 조정되고 있지 않다. NGOs는 그 동안 대외원조 과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고, 그들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현재의 대외원조법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폐지 주장도 있었고, 근본적인 개혁 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1961년 제정 당시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법도 일반적으로 원조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원조형태 및 대상, 시행기관의 역할과 위상, 중점 지원국 및 지원 분야, 민간단체 지원 및 자문기관 등 세부 추진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외원조에 관하여 방대하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원조법에는 너무나도 많은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방향으로의 원조가 불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기도 힘들다. 또한 많은 분야에 자금 책정, 보고 요구 등으로 인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우선 특징적인 것은 대외원조법에 개발협력의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 인간의 존엄성, 인권 및 기본적 자

유 실현, 바람직한 통치, 차별 철폐 등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고, 또한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연대성과 상호의존성을 간단히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원조법에는 미국의 개발협력의 목적 및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들처럼 빈곤퇴치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또한 인권존중 및 민주주의 원칙실현을 목적 및 정책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대외원조법은 방대한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일람(一覽)이 매우 어렵다.

2

「벨기에 국제협력법」은 벨기에 국제협력의 기본법으로서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부는 관련용어의 정의 등 일반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제2부는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는 벨기에 국제협력의 타당성 판단의 기준과 외부평가절차를 언급하면서 또한 벨기에 국제협력의 기본원칙을 직접적 양자협력, 다자협력, 간접적 양자협력의 세 유형별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벨기에의 국제협력법은 공적개발원조의 목적과 원칙, 협력할 주체의 선정기준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사업시행 상의 세부사항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있다. 이는 「벨기에 국제협력법」이 공적개발원조의 기본법으로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준다. 한편 본 법은 벨기에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국제협력의 운용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을 국왕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는 규정은 많은 반면, 총괄적인 국제협력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을 통제 및 조정하며 감독하는 주체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법적구조는 현재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체제가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정책 통일성의 부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부적인 특징으로서, 제1부는 일반규정으로서 벨기에 국제협력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명확한 용어사용의 통일은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의 체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제2부는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제3부는 제1장에서 개발의 타당성 및 목적 부합성의 평가 원칙 및 절차를, 제2장에서는 공적개발원조의 유형별 협력주체 선정기준 및 중점분야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장과 관련해서는 평가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내용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제2장의 경우는 공적개발원조를 유형별로 나누어 그 협력주체의 선정과 중점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반자 국가와 동반관계국제기구의 수를 각각 25개, 20개로 제한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꾀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벨기에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도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

3

스웨덴은 경제적 빈곤 국가의 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1962년에 「개발협력법」을 성립시켜, NIB라고 하는 조직을 창설하였고, 국제적인 개발원조활동을 시작했다. 당시의 국제협력의 활동은 평화와 안전, 연대, 무역의 촉진을 목표라고 하고 있었다.

현재 스웨덴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은, 2003년에 국회에서 채택되었던 법률 ‘책임의 분담 - 스웨덴의 국제협력개발에 대한 정책’에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입법화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그다지 주목을 모으지 못했던 정책도 포함하여, 스웨덴이 추진하는 원조정책이 개발도상국 빈곤층의 놓여진 상황에 큰 변화를 초래해 왔다는 정책담당자의 인식향상이 있다.⁸⁾

즉, 스웨덴이 실행하는 국제개발정책은 그 법제에 있어서도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관련되는 정책은 모두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4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법제는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개발협력의 목적과 원칙을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시행의 주요 주체인 오스트리아개발청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은 2002년 제정되어 2003년 개정되었으며, 5부 28개의 조문으로 되어있다. 제1부(제1조에서 제3조)는 정의 및 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제2부는 개발협력의 집행 및 시행(제4조), 개발협력 사업의 시행방식(제5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장, 개발협력청에 대한 제2장, 기금에 관한 제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청의 설립(제6조), 자산(제7조), 직무(제8조), 관리지침(제9조), 재정운용(제10조), 관리인(제11조), 운영위원회(제12조), 조정사무소(제13조), 개발청의 피고용인(제14조), 일반공무원의 전직(제15조), 계약직선임공무원의 전직(제16조), 회사의 피고용인이 된 공무원에 대한 적용규정(제17조), 평등대우(제18조), 휴가(제19조)로 구성되

8) Government Bill 2002/03:122. Committee Report 2003/04:UU3, Parliamentary communication 2003/04:112

어 있다. 제3장 기금에 대해서는 제20조가 규율하고 있다. 제3부는 자문 및 조정에 관한 것으로 개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제21조), 공적개발원조의 조정(제22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부는 기획 및 재정(제23조)에 관하여 규정하다. 제5부는 최종규정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제24조), 예산집행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제25조), 남녀평등(제26조), 개발원조법의 무효화(제27조), 집행책임주체(제28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부는 개발협력을 포함하는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정의 및 목적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는 일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 법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제2부는 개발협력의 실제 수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총 14개 조항을 오스트리아개발청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규정에 할애함으로써 이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오스트리아개발청의 설립은 연방외무부 내 개발협력 담당부서가 연방외무부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유한회사를 구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외무장관이 오스트리아개발청 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반수 및 그 중 1인을 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고 또 개발청의 계획수립에 대한 승인 권한을 보유하는 등 연방외무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부는 연방외무장관의 개발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연방외무장관의 개발정책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연방개발협력법은 연방외무장관이 각종 개발정책을 충돌이 없도록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연방외무장관의 3개년 계획 수립 및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연방외무장관이 3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매년 연방정부에 제출, 의회에는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5

ODA 관련 법제로는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법(JICA법)」을 살펴볼 수 있다.

원조의 실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술협력은 국제협력기구(JICA), 유상자금협력은 국제협력은행(JBIC) (1999년 9월까지는 해외협력기금(OECF), 무상 자금협력은 외무성 등의 체제로 실시되어 왔다. 2005년 코이즈미(小泉) 내각에서의 정책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은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가 되어, 내각 관방장관 아래에 설치되었던 「해외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海外經濟協力に関する検討会)」의 최종보고를 바탕으로, 원조의 실시체제 전반을 개편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6년 4월에 내각에 「해외경제협력회의」가 설치되고, 계속하여 같은 해 8월에 외무성의 기구개혁이 이루어져, 양국간의 원조와 국제기관을 통한 원조를 포괄적으로 소관하는 국제협력국이 발족되었다. 또 같은 해 11월에 JICA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성립되어, JICA가 기술협력, 유상 자금협력, 무상 자금협력의 세 가지 원조방법을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결정되었다. 신 JICA의 발족은 2008년 10월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본 법안의 의의로는, 첫째, 실시부문에서도 ODA 개혁을 실현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ODA를 조기에 실현한다. 둘째, 이를 위하여 신 JICA가 JBIC에서 유상자금협력업무를, 외무성에서 무상자금협력 일부의 실시업무를 각각 계승하여, 일본 ODA의 모든 방법, 즉, 기술협력, 유상자금협력 및 무상자금협력을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셋째, 신 JICA는 일본의 원조를 담당하는 인재·능력이 집결하게 되기 때문에, 세계의 원조 동향에서의 일본의 지위향상에 이바지하리라고 기대된다.

본 법안의 포인트로서는, 첫째, 신 JICA가 JIBC으로부터 엔차관 업무를 계승한다. 둘째, 신 JICA가 무상자금협력(기동적인 실시 등 외교정책의 수행상 필요에 근거로 하여 외무성이 계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제외)의 실시를 계승한다. 셋째, 신 JICA 전체의 주무대신은 외무대신이다. 다만, 엔차관의 재무·회계사항은 외무대신과 재무대신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일본정부는 신 JICA의 발족을 위해, 다양한 준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개혁은 단순히 조직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무성과 실시기관 사이의 역할분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원조업무의 방법을 대담하게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원조는 프로젝트의 축적에 의한 원조라고 말해져 왔지만, 이번에 실시된 개혁으로, 각료가 심의하는 기본전략에 따르는 형태로 원조정책의 기획입안이 이루어져, 외무성의 조정 아래에서 실시기간이 그 방침에 따른 안건을 실시한다는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 ODA에는 1부 12성청(1府12省庁)이 제휴하고 있지만, 정부전체의 입장에서 정합성, 일체성, 일관성이 있는 ODA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외무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상으로 관계부처들 간의 연계·조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 4 장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평가제도

1

1. 정 책

(1) 미국의 ODA 정책에 관한 일반적 고찰

미국의 전체적인 ODA 정책은 그 규모와 기여도는 크지만 외교 및 안보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성향이 강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은 안보 차원의 국익실현 이외에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ODA를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 2007년 미국의 ODA 지원 대상국 중 미군 주둔지역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원액이 각각 37억5천만 달러와 15억1천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했다. 이는 과거 냉전 시절 미·소 대결구도라는 세계질서 속에서 원조 정책을 자국의 세력 확보와 소련의 팽창 저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한 역사적 배경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이 미국 ODA의 특징은 인도적 목적 이외에도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패권국으로 지역분쟁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국은 ODA를 안보 차원의 국익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의회 산하 해외원조특별위원회(HELP)의 자체 평가에서 미국의 해외 원조는 지나치게 정치·안보적 목적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미국은 저개발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밀레니엄챌린지펀드’라는 독자적 정치발전 원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대외적 명분과는 달리 미국의 세계 전략에 활용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냉랭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통한 교육과 보건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은 수원국의 자생력을 증진시키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진 점은 민주적인 제도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 부문 위주의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다.

미국은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의 서명국이며, 민주주의 제도, 활성화된 시장, 인간에 투자하는 일을 포함한 善治(good governance)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수혜국의 요구 및 자신의 외교 정책 목표의 관점에서 개발원조정책을 정당화하였다.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win-win 접근방식은, 예를 들어 Marshall Plan⁹⁾의 경우와 1961년 대외원조법¹⁰⁾에서 적용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원조에 관련된 정치적 이유는 대부분 냉전과 관련되었다. 1990년대 초,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해 미국은 개발 원조의 논리를 심도 있게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이익, 국제 협정 및 개도국의 요구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원조 정책이 실용적으로 구체화 되어 가던 1990년대에는 새로운 비전을 끊임없이 탐구하였다. 의회는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간 대외원조 예산을 책정하는 관행을 통하여 주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맡아왔다. 이 기간 동안에 USAID는 의회로부터 자주 비판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예산 삭감과 감원을 강요받았다. 미국은 개발(development)을 외교(diplomacy) 및 국방(defence)(the 3Ds)과 함께 국가 외교 정책의 세 가지 핵심 중 하나로 인식한다. 국무부는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 기반을 두면서, “전

9) 공산주의를 격퇴하고 무역을 개선하는 것과 유럽을 재건하는 것.

10) 미국의 국가안보와 번영을 지원하는 것과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

세계의 많은 협력국들과 함께 그들 국가의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을 만들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대외원조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1) 경제성장 촉진, 2) 지속적인 민주화 추진, 3) 기근,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인류의 보호, 4) 지속적인 인류건강보호 및 인구증가억제, 5) 환경보호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5대 대외원조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시 19개의 세부목표를 설정, 대외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 시행기관

미국은 1961년 대외원조법을 제정하고 개발원조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ODA를 실시해 오고 있다. 미국의 ODA주무부처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이지만 ODA 시행기관은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 두 기관만 ODA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양자간 그리고/또는 다자간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은 26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정부 기관들은 ODA와 관련하여 서로 느슨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때론 활동이 서로 중복되기도 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ODA 사업의 통합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개발협력 사업에서 통합된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은 기관들끼리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와 정기적인 의사소통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ODA를 시행하고 있는 26개 정부 기관 중에서 개발협력 사업은 주로 6개 기관, 즉 USAID,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농림부, 새천년도전협회(MCC)등이 관여하고 있다. USAID, 국무부, MCC를 제외하면 국방부, 재무부, 농림부 등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들 기관 이외에 다른

부서는 미국 개발협력사업의 추가적인 관여 양상을 보이고 있고, 보통은 이 사업만을 위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직원이 별도로 많지 않다. 특이할 만한 점은 2005년 이후 국방부에서 큰 규모의 정부개발원조 관리 역할을 맡은 것인데 이것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대규모 재건 사업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었고 인도양 쓰나미 이후 큰 규모의 인도주의적 구제가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비정부 조직, 개인 민간단체를 포함한 민간 사회단체의 개발협력 활동도 중요하다. 비정부 단체는 1961년에 창립된 이후로 USAID 원조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중요한 협동자이다. 이런 비정부단체는 규모가 크고 기금이 잘 모아지며 가끔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비정부단체 관련기관의 다양한 종류는 회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대표하고 있으며 정부 원조 체계 혹은 국제 발전과 인도주의적인 큰 규모의 통솔 기관 중에 하나인 의회 상호 기관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165개 국가는 민간 기부자에게서만 매년 30억 달러의 기부금을 전체적으로 제공 받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기부재단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 교육, 환경에 관련된 중요한 개발 작업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교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외교, 군사, 경제 등의 폭 넓은 문제에 관한 외교 정책 목표를 실행하고 있다.

USAID는 국무장관으로부터 대외정책지침을 받는 독립적인 연방정부기관이다. 본부는 Washington, D.C 에 있으며, 세계 70 여개 국가에 현장사무소가 있으며, 이들이 USIAD의 강점이다. USAID의 청장(Administrator)과 부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상원에서 승인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USAID의 주요 조직 단위는 ‘국(局)’(Bureau)이고, 각

국의 직원들은 USAID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USAID의 국(局)은 지리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반영하여 조직되어 있다. 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①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국, ② 아시아국, ③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국, ④ 유럽 및 유라시아국, ⑤ 중동국이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USAID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① 세계보건국, ② 경제성장, 농업 및 무역국, ③ 민주주의, 분쟁 및 인도적 원조국이 있다. 더불어 본부의 주요한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① 관리국, ② 입법 및 정책국이 있다. 이러한 국 단위 부서 이외에 독립적인 7개의 ‘실(室)’(Office)을 두고 있다. USAID는 1961년 창립된 이후로 개발원조 체계 조직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미국의 개발원조의 전문가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05년에는 공적개발원조의 38.8%를 차지하며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폭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에 대한 개념에 대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USAID의 활동은 크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77개 현장 임무로 분산되어 있는 체계이다. 현장 임무는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역적 임무는 “업무의 중심”으로 알려져 있어 다양한 국가적 임무를 제공하고 독자적인 지역적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USAID는 민간자원봉사단체들, 원주민단체들, 대학들, 미국기업들, 국제기관들, 기타 다른 국가 정부들 그리고 기타 미국의 정부기관들과 함께 밀접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USAID는 3500개 이상의 미국 기업들과 300개가 넘는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간자원봉사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MCC는 2002년 3월에 미국 대통령이 설립 의사를 밝힌 후 2004년 1월에 조직된 단체로 “정의롭게 통치하고, 인간에게 투자하며, 경제적 자유를 독려하는” 국가에게 원조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새로운 개발 메카니즘이다. MCC는 2004년에 의회 양당의 지지로 만들어

졌으며, MCC 행정 하부 조직은 3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해외 활동을 하고 있다. 설립 이후 미국의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2. 미국의 ODA 시행 사례

역사적으로 미국은 피원조국의 필요와 미국의 외교정책의 목표를 근거로 자신의 개발원조정책을 정당화해왔다. 미국의 ODA가 지나치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부시 정부 초기의 안보중심의 원조정책은 말기부터 방향이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클린턴 정부에 접어들어서는 탈냉전이라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원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원조목표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즉 미·소 대결구도 하에서 유럽과 제3세계에 초점을 둔 외교정책의 의미가 퇴색됨에 따라 원조목적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원조정책의 주요 우선 과제로는 동유럽,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 및 기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증진, 강력한 자유시장 경제의 구축, 최빈곤 제3세계 국가들의 장기개발과 빈곤퇴치, 미국의 상업적 국가이익과 원조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미국 기업의 무역환경 개선 등이 강조되었다.

최근의 세계적 개발원조 추세가 원조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 인구문제 등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국의 원조 배분 전략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지금까지 원조 배분의 주요 기준이었던 국가별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인구, 경제발전, 민주주의, 인도주의 등의 원조 배분을 위한 기능적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원조규모를 할당하는 방식의 배분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 배분에 있어서는 안보적 목적에 의한 원조규모를 줄이는 대신 경제적, 인도적 고려에 의한 원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ODA 사례들을 보면 농업지원 (agriculture), 민주주의와 국정관리지원(democracy & governance), 경제 성장과 무역 원조(economic growth & trade), 환경지원(environment), 교육지원(education & Training), 의료지원(health),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인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등이다.

미국의 무역원조정책은 미국의 전체적인 개발원조의 틀 속에 통합되어 있다. 미국은 무역과 개발, 그리고 이 둘의 상호관련성을 지지하며 옹호한다. 2002년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에서 개발이 외교나 국방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확인한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6년 1월 ‘대외원조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기본체계’(New Strategic Framework for Foreign Assistance)를 공표하였다. 경제성장은 이 체계의 5개 기둥 중의 하나이고, 무역을 위한 지원 또는 무역능력개발(Trade Capacity Building, TCB)은 경제성장의 기둥의 가운데 가장 주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미국의 무역원조프로그램은 다음 같은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한다. 정책성과의 장기적인 지속성, 현장의 지역적 주인의식과 공약준수(local ownership and commitment), 공여국간의 협력이다. 이 원칙들은 미국이 유연하고 효율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여국으로서 미국은 자국의 협력 파트너인 개발도상국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TCB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은 다음과 같이 미국의 원조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무역원조 이외에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 분야, 경제적 기반시설과 서비스 및 생산분야, 인도주의적 원조, 식량원조, 여성 개발사업, 빈국의 채무경감 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평 가

USAID는 원조목표(Assistance Objectives, AO)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기관이고, AO는 전세계에 걸쳐서 선택된 국가들과 지역의 개발 상태를 개선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은 ODA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ADS(The Automated Directives System) 203장(Chapter)을 마련하여 USAID 운영 단위 기관들(USAID 사업단들(Missions), 지역 플랫폼(Regional Platforms), 워싱턴의 여러 국(局)과 실(室)(Washington Bureaus and Offices))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계획된 성과를 잘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USAID의 실행과 기준에 관해 지침(guidance)을 제공하고 있다. ADS 203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AO팀(Team)은 성과를 관리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어떻게 양적 및 질적 이행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2)계획한 개발 성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교육을 장려하고 장래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행감시와 평가의 도구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3)Portfolio Reviews, 미국 정부의 연례 공동 운영계획(OP), 미국 정부의 연례 공동 이행보고서 등과 같은 과정들을 USAID 및 그 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AO를 평가하고 이행 분석 및 교육에 기여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4)목표한 성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나타난 진보(progress)를 제한하는 요소들과 목표한 성과의 달성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의 종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5)USAID는 어떻게 USAID 내에서 배운 교훈을 미국 정부의 대외문제 다루는 기관들에게 공유하기 쉽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간단히 말하면, ADS 203장의 주요한 내용은 USAID 사업단/부서들이 사전에 AO가 달성하려고 했던 성과를 구체화한 경우에 어떻게 계획된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등 AO의 효과(impact)를 평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평가체계는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DS 203장에는 이행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이행관리계획(PMP), 이행관리계획을 위한 이행지표, 평가계획수립에서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문서,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

1. 정 책

(1) 수행방식

1) 형 태

벨기에 개발협력은 크게 직접적 양자협력, 다자협력, 간접적 양자협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수행된다(『벨기에 국제협력법』 제2장 참조). 이 중 직접적 양자협력은 벨기에 정부와 개발협력의 동반자 국가의 정부 간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발협력을 의미하고, 다자협력은 국제다자협력을 추구하는 국제기구들과의 개발협력 혹은 이들에 대한 출자를 뜻하며, 간접적 양자협력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는 비정부기구 기타 단체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발협력을 말한다. 벨기에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한 개발협력사업 및 계획들이 일관성 있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편 이와 더불어 일반 대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벨기에 개발협력수행의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 벨기에 개발협력 유형 중 직접적 양자협력은 정부협력(governmental cooperation)으로, 간접적 양자협력은 비정부기구협력(non-governmental cooperation)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2) 공적 행위자

동반자(partner)로 언급되는 벨기에 국제협력 관련 행위자는 첫째 개발협력총국과 벨기에기술협력을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기관, 둘째 정부협력(governmental cooperation) 관계에 있는 동반자 국가, 셋째 공인된 비정부기구, 대학, APEFE 및 VVOB, 과학 기관 등으로 구성된 비정부 행위자, 그리고 넷째 다자협력 관계에 있는 다자기구 중심의 다자간 동반자의 네 부류로 나누어진다.

먼저 공적개발원조 관련 정부기관인 벨기에 연방외무부는 2명의 각료(Ministers) 및 산하 6개의 국(directorates)으로 구성되어 있다. 2명의 각료 중 외무각료(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나머지 5개의 국을 감독하며 개발협력각료(Minister of Development Cooperation)는 개발협력총국을 감독한다. 벨기에의 개발협력은 개발협력각료 하의 개발협력총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개발협력총국은 벨기에 개발협력의 조직 및 전략의 고안을 담당하며 이의 실제적인 수행은 벨기에 기술협력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둘째 국가협력의 동반자 국가는 「벨기에 국제협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경제개발, 인간개발지수 및 인간빈곤지수의 수준에 비견하여 측정된 빈곤의 수준, 동반자 국가의 맥락에서의 벨기에 국제협력의 현재적 경험, 동반자 국가 스스로의 자국 사회·경제개발에의 공헌, 동반자 국가에 의한 선치 원칙의 준수, 벨기에 국제협력이 국제적 차원에서 개입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고 새로운 폭력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동반자 국가 내에서의 위급상황의 발생, 지역협력의 맥락에서 동반자 국가 내의 지역통합의 수준, 동반자 국가 내의 당국에 의해 추구되는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설립하려는 정책들과 같은 7가지 기준으로 수혜국을 최대 25개 국가까지 선정할 수 있다. 현

재 18개국(알제리, 베냉, 볼리비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자치령, 페루, 르완다,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및 베트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비정부행위자로는 공인된 비정부기구, 다자간 동반자, 대학, APEFE 및 VVOB, 그리고 과학 기관이 있다.

넷째 벨기에 개발협력총국의 다자간 협력은 주로 3개의 기관과 함께하는데 이는 모두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 세 기관은 ① 유엔과 관련 기관들, ② 유럽연합, ③ 국제 금융기관들 특히 세계은행이다. 벨기에는 이들 중 특히 유럽연합의 기관들(EC와 유럽개발기금, European Development Fund)과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에 중점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 대한 출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9% 증가하여 벨기에 전체 다자협력 자산구성에 있어 54%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출자는 전체 다자협력의 28%, 유엔에 대한 출자는 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벨기에가 현재 초점을 두고 있는 인도적 원조 및 농업 분야의 유관기관들에 대해서 벨기에는 2008년 이후 계속해서 그 원조를 늘리고 있다.

3) 수행국가 및 지역

빈곤의 정도, 선지의 측면 및 유의미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벨기에의 능력에 기초하여 18개의 정부협력 동반자 국가가 선택되었다. 선택의 정확한 기준은 「벨기에 국제협력법」에 설정되어 있으며, 수혜국은 최대 25개국으로 제한된다(「벨기에 국제협력법」 제6조). 목표한정적인 이 정책의 관점에서, 개발협력총국은 일부 국가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였다. 동반자 국가는 현재 모두 18개국 즉, 알제리, 베냉, 볼

리비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자치령, 페루, 르완다,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및 베트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지속가능한 개발은 평화가 확립된 상황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벨기에는 분쟁에 의해 황폐화된 아프리카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는 개발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프리카지역에서의 벨기에 개발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대호수지역(Great Lakes Region, 이하 대호수지역) 취약국가(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르완다)들의 화해, 민주주의 증진, 국가와 사회구조의 재건이다.

정부협력과 관계된 18개의 동반자 국가 외에 몇몇 타 개발도상국들도 벨기에의 원조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관련한 원조 계획은 연방외무부 예산 하의 긴급적 혹은 인도적 지원이어야 하며, 개발협력 혹은 재무부 예산 하의 차관 혹은 부채탕감에 관한 것에 한한다. 한편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은 벨기에 정부 외에 기타 행위자들(비정부기구, 대학,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기타 행위자)과의 교류를 통해서 원조를 받기도 한다.

4) 수행주체

벨기에 국제협력의 기본적인 중점분야는 「벨기에 국제협력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생식건강을 포함한 기본적 보건의료, 교육, 농업과 식량안전, 기본적 사회기반시설, 분쟁방지와 사회통합의 다섯 가지이다. 하지만 벨기에는 이를 발전시켜서 현재 12가지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벨기에 국제협력의 12가지 주제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농업과 식량안보, 환경과 기후변화, 이주와 개발, 교육과 훈련, 기본적 보건의료, 기본적 사회기반시설, 사회통합, 성, 통상원조, 아동권리, 민간부문개발이다. 특히 벨

기에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벨기에 개발협력정책의 중심에 놓기로 결정하였으며, 인간개발과 빈곤 퇴치가 새천년개발목표의 핵심이라는 판단 하에 현재 국제적 차원의 새천년개발목표를 국내적 차원의 공적개발원조 이행에 집중시키고 있다.

5) 개발정책

벨기에는 파리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의 이행을 가능케 하기 위해 개발협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의 2007년 조화와 일치 계획(Harmonisation and Alignment Plan)은 벨기에가 원조효과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해야 한다는 2005년 개발원조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한다. 벨기에는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에 맞춰진 4개년 유도적 협력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최근의 정책 및 전략적 결정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개발협력총국은 특정한 아크라행동계획을 개발하기보다 조화와 일치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직원 대상 실천지침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실용적 접근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모든 벨기에 개발 주체들의 활동에 대해 파리선언의 의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벨기에의 노력은 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개발 주재관(development attachés)은 벨기에 개발협력 주체들 간 상승효과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벨기에 정부의 비정부기구와의 2009년 협정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으로서, 비정부기구가 파리선언의 원칙들을 준수할 것과 개발협력총국이 그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위탁하고 있다.

2. ODA 시행 사례 : 아동 권리

(1) 아동권리협약과 벨기에 협력정책

벨기에에는 아동권리협약을 2005년 6월 7일 비준하였고 이에 벨기에 의회는 이에 따른 벨기에의 국제적 책무를 수용하였다. 이는 벨기에가 벨기에 개발 협력에 관한 다섯 가지 우선순위 부문에 있어서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네 가지 원칙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동반자 국가들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들과 조항들을 외면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벨기에 협력의 다섯 가지 우선순위 부문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권고들

아동의 권리 중심의 접근은 세 가지 다른 단계에서의 동시적 활동을 전제하고 있다.

- 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구조와 기제들을 강화한다.
- ② 아동의 권리들을 존중하기 위한 특별하고도 실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 ③ 정책 설계자들과 전문가들, 언론, 사적 부문, 시민 사회와 일반 대중에게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운다.

3. 평 가

개발협력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시 및 평가가 이루어진다. 벨기에의 감시 및 평가부서(Monitoring and Evaluation Department)는 개발협력총국에게 직접 보고하는 내부 부서이다. 감시 및 평가부서는 특별 평가단(Special Evaluation Unit)과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특별

평가단이란 1999년에 벨기에 국왕의 칙령(royal decree)에 의해 창설된 외부 기관으로 공적개발원조의 범위 안에서 수행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 및 계획에 관한 전략과 정책들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개발협력총국 내부적 감시 및 평가는 모두 개발 협력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감시와 평가 모두 벨기에의 개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가능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과거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장래 활동에 대한 의사 결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감시와 평가는 개발협력총국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이해당자들(예를 들어 장관들, 의회 및 일반 시민)에 대해 활동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게 한다.

특별 평가단은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연방 국가의 모든 활동들에 대해 평가하는 과제를 담당한다. 평가단은 매년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우선순위로 계획을 짜고 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들과 교훈에 대해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개발 협력 장관에게 제출한다. 장관은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3

1. 정 책

(1) 수행방식

스웨덴에서는 내각 내의 장관으로서 개발협력장관이 개발원조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외무성 부장관(개발협력담당)과 외무성 전지구개발국이 보좌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¹¹⁾.

11) 스웨덴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정부 모체는, 스웨덴 외무성 국제정책부(Department For Development Policy) 및 개발협력관리부(Department for Management and Methods in Development Cooperation),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SIDA) 및 스웨덴 수출신용채권청(Swedish National Export

개발협력정책의 기획·입안, 예산계상은 외무성이 실시한다. 원조의 실시에 있어서는 국제기관을 통한 원조를 외무성 전지구개발국이 담당하고, 양국간 원조에 대해서는 국제개발청(SIDA)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별 원조전략에 대해서는 SIDA가 파트너 국가와의 협의에 기초로 하여 작성·입안하고, 이를 외무성이 승인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스웨덴의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보다 조직화 된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의회, 외무성, SIDA 간에 효율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이후, SIDA는 실시에서의 의사결정을 대사관 차원으로 위양하는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중앙통제형이 아닌 시스템이 필드 차원에서 잘 기능하고 있다. 또 스웨덴은 도너(donor)간의 조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하고 있다.

스웨덴은 개발원조의 분야에서는 규범적인 국가의 하나라고 간주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그 ODA 규모 이상의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은 원조의 주안점을 빈곤탈피와 인권·인도지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가 등을 주요 지원대상국으로 하고 있다.

(2) 8대 정책

스웨덴은 그러한 국제지원정책을 통하여, 인권문제의 해결과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는 그리 간단히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배후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상호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스웨덴정부는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수행하는데

Credits Guarantee Board: EKN)의 세 조직이다. 외무성은 정책 전체와 국제기관을 통한 다국간에 대한 지원, SIDA는 양국간 협력, EKN은 무역과 해외상업활동의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SIDA와 EKN은 행정적으로는 모두 외무성에 소속되는 기관이다.

있어서, ① 인권의 존중, ②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③ 남녀의 격차해소, ④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에 대한 배려, ⑤ 경제성장, ⑥ 사회의 발전과 복지제도, ⑦ 국제분쟁에 대한 대처와 안전보장, ⑧ 모든 인류의 평화로운 생활 등의 8가지의 정책요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2. ODA 시행 사례 : 기후변동정책¹²⁾

스웨덴 정부는 기후변동문제를 지금 세기의 주요한 환경 및 정치적 도전으로 보고 있다. 스웨덴은 EU내의 온실효과가스 삭감분담(burden sharing)에서, 교토의정서 제1약속 기간(2008-2012년) 동안에 1990년 대비 4%를 초과하지 않는 배출제한 의무를 지고 있다.

스웨덴의 환경성에 의하면, 이러한 성공은 경제적 정책수단에 기초로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1991년에 이산화탄소세를 도입했다. 이러한 탄소세는 다양한 연료에 포함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예를 들면, 탄소의 세율은 천연가스보다도 높고, 목재나 에탄올 등의 바이오연료에는 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스웨덴에는 그린전력 인증시스템이 있고, 풍력이나 수력 등의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했던 발전, 또 바이오연료사용의 열전병급(combined heat and power production: cogeneration) 시스템에 의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인구 900만의 스웨덴의 지구온난화 기여율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일지도 모르지만, 이 문제의 해결에는 국제적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단기·장기의 온실효과가스 삭감목표를 세워 기후변동문제에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은 2009년 9월에 EU의 의장국에 취임하게 됨에 따라, 2013년 이후(교토의정서의 제1약속 기간 이후)의

12)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wedish Policies to Combat Climate Change", 2007.

장기삭감 형성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환경부 장관은 2007년 6월에 27개국의 환경부장관회의를 개최했을 때에, 미래의 국제체제(regime)의 요소로서, ① 모든 국가에 의해 적응책이 채택될 필요가 있지만,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② 모든 개발국에 대한 보다 야심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삭감목표의 설정, ③ 개발도상국에 의한 (기후변동) 완화행동의 강화, ④ 삼림벌채 문제에 관한 행동, ⑤ 적응정책과 완화정책의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처할 것, ⑥ 완화, 적응,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경제사회의 탈(脫)산소화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및 그 보급과 상업화, ⑦ 투자, 인센티브, 재정,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문제에 대한 의식향상과 교육 등의 7개 사항을 중시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즉, 스웨덴은 협조적인 국제적인 노력에 근거로 하는, 효과적이고 공평하고, 또 포괄적인 다국간주의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¹³⁾.

3. 평 가

(1) 평가주체

SIDA의 평가작업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 ① SIDA의 각 부처가 각각의 업무분야에서 실시하는 평가
- ② SIDA의 평가·내부감사사무국(UTV)¹⁴⁾에 의한 SIDA의 ODA 전체에 걸친 평가

13) Ministry of the Environment, 2007, p.3.

14) UTV는, 평가를 전문으로 행하는 부문으로, ODA 전체를 대상으로 방법론도 포함하여 전략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작업은 UTV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과 다른 원조국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UTV의 또 다른 역할은, ODA를 실시하는 부대에 대하여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실시하고, 다음의 활동에 역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 The Swedish Agency for Development Evaluation (SADEV)¹⁵⁾에 의한 국가 전체의 평가

또, 실제로 관계자에게 면접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의 3단계에 관여하는 기관이 외국의 컨설턴트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2) 평가의 활용

1999년 이후, 스웨덴에서는 ODA의 실행부대가 작성했던 평가보고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운용과 반영(Management Response)”이라고 불리는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매뉴얼은 평가보고서가 지적하는 문제의 해결방법과 개선점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안을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어떻게 하면 더욱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지시를 제시하는 것이다.

4

1. 정 책

(1) 수행방식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주요 목적은, 첫째 평화와 인간안보의 보장, 둘째 전지구적 빈곤 감소, 셋째 환경의 보전이다. 이러한 개발협력의 주요 목적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수혜국과 함께 양자적 개발협력을 진행하며, 국제기구와 함께 다자적 원조를 제공한다. 다자적 및 양자적

15) SADEV(스웨덴 개발협력평가청)은 2006년에 새롭게 설립된 기관으로, SIDA의 ODA뿐만 아니라, 스웨덴이 관여하는 모든 ODA를 분석·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계획은 모두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상호 연결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의 양자적 개발협력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동남부 유럽의 7개 우선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두 국가 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의미하는 양자적 개발원조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실무기구인 오스트리아 개발청을 통해 주로 실행된다. 2005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과제에 명시된 새로운 원조체계는 더 높은 수준의 원조 효과와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빈곤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는 예산지원과 같은 새로운 원조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는 2005년 몇몇 우선국가에 있어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예산지원을 제공했다.

다자적 개발협력은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전반적인 접근방식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자적 개발협력은 외무부의 제7국 제1과가 직접 관장한다. 오스트리아는 직접적 기여와 특정 계획을 통해 그리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자기구를 지원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연합, 세계은행, 경제개발협력기구,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유럽연합의 개발협력위원회 내에서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적 구호 계획을 조율하는 것도 다자적 개발협력 하에서 진행된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국제 적십자, 국제연합 중동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사업 기구,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시민사회가 및 민간부분의 협력도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일부로서 비정부기구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나라들에서 개발협력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기구는 소외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힘없

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홍보 및 교육활동, 정치적 압력행사 등에 관여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민간투자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노하우를 축적시키며, 수입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

(2) 수행국가 및 지역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 아메리카, 남동부 유럽의 7개 주요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12개 조정사무소를 설립하여 협력적인 동반자관계에 기반한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협력이 지역여건에 맞게 지향되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직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주요지역과 우선순위 국가를 두어 활동한다. 남반구에서는 중앙아메리카(니카라과), 서아프리카/사헬(부르키나 파소), 동아프리카(에티오피아, 우간다), 남아프리카(모잠비크), 히말라야/힌두쿠쉬(부탄), 기타(팔레스타인)이 해당하며, 동유럽에서는 남동부유럽/서발칸(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세르비아, 코소보), 남부코카서스가 해당한다.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에서 오스트리아는 무역관계의 개방정책이 이행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메리카는 1992년부터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우선순위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 오스트리아는 주로 농촌개발, 중소기업 진흥, 재생 에너지, 능력배양 등에 관련해 왔다.

서아프리카/사헬 지역에서 오스트리아는 에너지의 사용을 지원하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지역본부 설립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평화를 유지하고 분쟁을 방지하려는 이곳 지역기구들의 노력을 장려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오스트리아는 상수도 공급 및 위생에 관한 부분에서 지원을 펼쳤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이 지역에서 수년에 걸

쳐 세계은행의 수자원 및 위생 계획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우간다에서는 상수도 공급 및 위생 사업을 실행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개발협력의 우선순위를 화해, 평화와 인간안보 보장,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계획 및 사업에 두어 난민과 소년병들이 그들의 마을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동 아프리카에서는 탈집중화와 지역화를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 예로 에티오피아에서 보건 및 식량 분야에 관한 지방단체의 능력배양을 크게 장려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빈곤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가용한 자원과 빈곤에 노출된 사람들의 실제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빈곤퇴치를 위한 광범위한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민주화와 사회적 평등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이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지역에서 오스트리아는 법의 지배, 공정한 거버넌스 등을 지원하는 계획과 사업을 장려해 왔다.

히말라야/힌두쿠쉬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개발을 위해 가용자원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지역의 별 품종을 보존하는 데에 원조를 제공했고, 이 지역대지의 60%를 차지하는 목초지 계획을 통해 유목민의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였다.

남동부 유럽/서부 발칸 지역에서는 자국 민간부문과 기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다른 지역 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 사업들을 조정하는 주된 국제체계로 남동부 유럽 안정화 협약의 후신으로 사라예보에 사무국을 두는 지역협력이사회가 있다.

남부코카서스는 인종구성과 언어 측면에서 볼 때 유럽에서 가장 다양한 지역에 해당한다. 개별 국가들은 독립 이후 해결되지 못한 영토 분쟁에 여전히 휘말려 있다. 때문에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대화를 통해 개발과 번영의 주된 장애물인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남부 코카서스 내의 신뢰구축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국제기구, 팔레스타인 비정부기구와 함께 업무를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 주민, 응급구호, 난민보호를 위해 특히 중요한 보건 및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들을 장려하고 있다.

(3) 수행주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주제별 우선순위의 목록은 식수 및 위생, 개발 관련 교육, 훈련, 과학 및 연구, 농촌 개발, 에너지, 투자 및 고용, 중소기업의 증진, 분쟁방지 및 해결, 선한 거버넌스 및 법의 지배, 민주적 분권의 발전, 탈중앙집권, 인권 및 인간안보의 강화이다.

2. ODA 시행 사례 : 개발과 인권

오스트리아는 공적개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통해 공적개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공적개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1990년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즉 인간의 필요(need)와 권리(rights)에 적합하도록 고안한 개발철학을 도입하면서 국제적으로 부상하였다. 인권중심적 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으로 명명되는 방법은 국제법에 명시된 인권에 기초하고 그러한 인권의 관점에서 특정한 문제 또는 상황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을 뜻한다.

1990년대 이후부터 빈곤감축은 개발협력의 최우선적 목표로 자리를 잡고 있고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2015년까지 빈곤과 기아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빈곤감축과 같은 개발협력의 수행을 인권에 기반하여 접근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확산시키고 있다.

오스트리아 인권정책문서는 오스트리아개발청의 모든 활동이 국제연합 인권조약에 기반하고 그 실제 이행에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편으로는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 사업 및 계획에서 인권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활동 영역과 부문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규범적 원칙, 즉 비차별과 평등한 기회, 참여와 권한부여, 책임귀속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은 해당 지역의 각 동반자 또는 우선순위국가(priority country)의 인권상황에 대한 주제별 평가(thematic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러한 우선사항들을 개입부문(intervention sector)에 포함시켜, 인권을 계획 수립의 한 구성요소로서 고려한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수민족에 대한 보호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는 경우, 그 국가에 대한 계획은 장래의 모든 계획에서 이를 교차부문 주제(cross-sectoral theme)로서 다루거나 부문별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3. 평 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사업을 기획, 의뢰 및 관리를 하고 계획을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 속에서 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평가를 제도적 틀 내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사업 및 계획 평가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Project and Programme Evaluations)을 통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할 기반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평가 개념은 “진행 중인 또는 종료된 사업 또는 계획의 설계, 적용 그리고 결과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뜻한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i) 경험을 통한 학습, ii) 투명성, iii) 이해의 심화, iv) 소통의 개선의 4가지이다. ‘경험을 통한 학습’이란 평가를 통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업과 계획이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이다. ‘투명성’이란 책임감 있는 자원의 활용을 제시

하여, 계약자, 동반자, 수혜국 내 대상집단과 납세자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 받기 위한 목적이다. ‘이행의 심화’란 평가를 통하여 개발협력의 전제, 선택사항 및 한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소통의 개선’이란 계약자, 동반자, 수혜국 내 대상집단과 납세자 간에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는 목적을 말한다.

(1) 원칙과 체계

오스트리아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이자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의 기준 마련에 참여하고 그 기준에 대한 개발원조를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가 시행하고 있는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역시 그 평가의 원칙과 기준은 국제적 준거와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되고 적용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평가에 적용되는 국제적 평가 원칙과 기준은 크게 객관성, 평가자의 독립성, 관련 당사자의 전 과정 참여, 투명성 및 집중성, 신뢰성, 보고서의 완결성 및 명확성, 공정성 및 관련 당사자 이익의 보호, 유용성이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에 따른 계획과 사업의 평가는 연방유럽외무부와 오스트리아개발청의 공동책임이다. 연방유럽외무부는 다른 기여자와 함께 평가사업을 조정하고 평가전략의 틀을 짜는 한편, 개발청은 동반자기구와 직접 손을 잡고 평가를 관리하고 실시한다. 이러한 평가는 독립된 통섭적 전문가팀(team of independent, interdisciplinary experts)이 지방전문가의 참여 하에 수행한다. 평가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며, 복잡한 주제들을 분석하고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효과들을 찾아낸다. 평가 자체는 사업 또는 계획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오직 권고와 관찰만을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개발청에 의해 집행되는 평가유형은 크게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나뉘어진다. ‘내부평가’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사업의 동반자들 스스로 직접 위임하고 관리하고 시행하는 평가를 사업 동반자들이 직접 관리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외부평가’는 오스트리아개발청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말하는데, 해당 사업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개발청이 담당한다는 점에 의거하여 외부적으로 분류된다. 재정규모가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계획 또는 사업은 외부평가를 받고 오스트리아개발청이 조정을 맡는다. 재정 규모가 100만 유로 이하인 계획 또는 사업은 필요할 경우 내부평가에 추가하여 외부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

(2) 평가항목 및 지표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및 계획의 평가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 i) 관련성, ii) 효과성, iii) 효율성, iv) 영향력, v) 지속 가능성이 있다. ‘관련성’이란 개발을 위한 간섭의 목표가 수혜자의 요구, 국가의 필요, 전세계적 우선순위와 동반자 및 기여자들의 정책들과 일관성이 있는 정도를 뜻한다. ‘효과성’이란 개발을 위한 간섭의 목표가 그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에 달성된 또는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뜻한다. ‘효율성’이란 자원과 투입되는 기금, 전문지식, 시간 등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결과로 변환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영향력’이란 개발을 위한 개입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고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그리고 제1차적 또는 제2차적 장기 효과를 낳았는가를 뜻한다. ‘지속가능성’이란 주요 개발 원조가 완성된 이후에 개발을 위한 간섭으로 얻는 이익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5

1. 정 책

(1) 원조의 전략성 강화

일본의 경제·재정상황이 엄격한 가운데, 과거와 같이 폭넓은 국가 및 분야를 대상으로 「넓고 얇게」 지원으로 효과를 거두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세 가지 주요 사항에 따라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원조를 실시해 가기 위해, 대상국마다 원조의 방향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어프로치를 강화한다.

1) 원조의 방향성의 명확화

① 원조의 「선택과 집중」

대상국·국제기관마다의 원조·거출금의 의의나 효과를 분석한 뒤, 원조방침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원조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원조의 중점분야와의 관계, 대상국의 국가정비에 대한 자세, 대상국의 개발목표, 일본의 개발 약속(commitment), 일본과의 양국관 관계 등에 비추어, 전략적으로 판단한 뒤, 대상국마다의 원조의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난 후, 원조를 실시하는 것의 정책적 유용성을 국가·지역 횡단적으로 평가하고, 대상국의 원조흡수 능력이나 원조 니즈를 바탕으로 하면서, 년도 당초에 책정하는 국제협력중점방침 아래, 원조를 실시한다(예: 국제교섭에 대한 자세를 바탕으로 특정분야에서의 원조를 강화한다, 지역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등).

② 국제협력기획입안본부의 적극적 활용

외교정책과 합치한 개발협력을 실시하기 위해, 국제협력기획입안본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선택과 집중」에 의한 원조의 방침을 책정할 때에는, 동본부를 활용하고, 정무 레벨 아래에서 논의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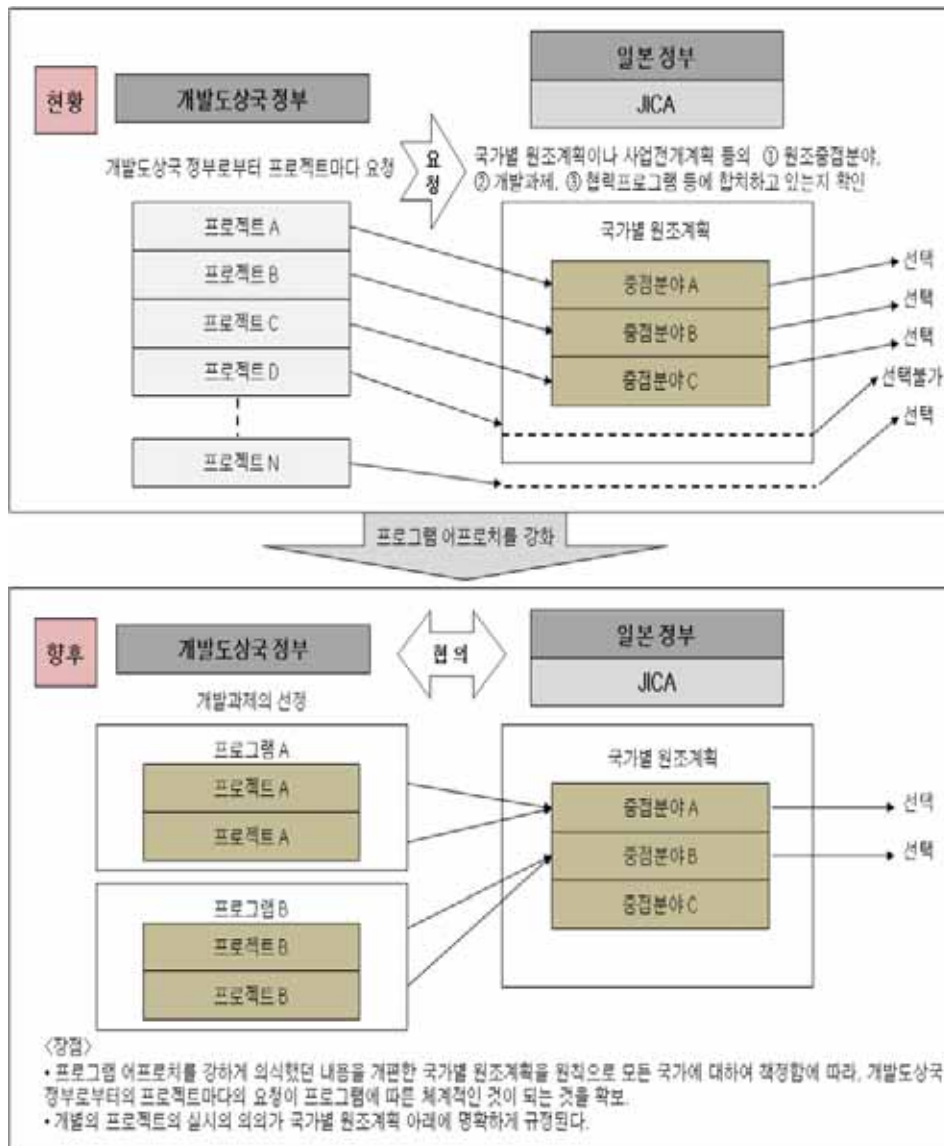
③ 국가별 원조계획의 제도 재검토

국가마다의 원조의 중점분야나 방침을 한층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가별 원조계획을 간결하고 전략성이 높은 것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국가별 원조계획과 사업전개계획을 통합하고, 그 내용 및 책정 프로세스를 간결화·합리화한 뒤, 원칙적으로 모든 ODA 대상국에 대하여 책정한다.

2) 프로그램 어프로치의 강화

원칙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매 프로젝트의 요청에 근거하여 개별의 원조실시를 검토하는 현재의 어프로치에서, 개발도상국과의 정책협약에 근거로 하여 개발과제 해결을 위한 개발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원조대상(프로젝트)을 도출해가는 프로그램 어프로치의 이행을 도모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형성함으로써 프로젝트간의 상승효과를 거두고, 전체적으로 성과의 향상을 도모한다. 그때, 무상 자금협력, 유상 자금협력, 기술협력 등의 원조방법을 유기적으로 조합한다.

먼저는 올해(2010년) 중에 2~3개국 정도를 목표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행적으로 착수한다. 또 프로그램 어프로치 강화를 위해, 원조대상국의 현지에서의 정책협약·원조협조의 기능, 모니터링, 개발니즈분석(JICA 분석 페이퍼의 도입)을 강화한다.



(2) 보다 효과적인 원조의 실현을 위한 노력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성의 향상에 더불어, 원조를 실시하는 어프로치, 방법, 프로세스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원조량뿐만 아니라, 성과를 중시했던 원조

를 실시한다(성과증시에 대한 전환). 또, 현장의 니즈에 부응함과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외교정책의 수행에 이바지하도록 원조방법을 개선한다. 동시에 신속하고 헛됨이 없고, 경쟁성이 있는 실시 프로세스를 확보한다.

1) 성과증시에 대한 전환

각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로 기대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안건 채택 시에 명시·공표함과 동시에, 안건실시의 종료시에는 종료보고를 공표하고, 또 3년 후를 목표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성과의 달성상황을 공표한다(「가시화」). 이에 따라, 원조효과를 누구라도 알기 쉽게 지시함과 동시에, 성과를 증시했던 원조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쌍방에서, 단순히 원조투입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개발과제의 개선에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구조(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검토한다(예: 건설했던 병원의 수나 연수했던 의료종사자 수뿐만이 아니라, 조산부 입회하에서의 출산률의 개선을 모니터하고, 영유아 사망률이나 임산부 사망률의 감소에 얼마만큼 공헌했는지를 가능한 한 수치화하여 제시한다).

2) PDCA 사이클에서의 제3자의 관여

원조의 안건형성·실시·평가·개선이라는 PDCA 사이클에서, 제3자의 관여를 얻음으로써, 철저한 「가시화」와 맞물려, ODA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의 향상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던 무상 자금협력 실시적정회의를 개조하고, ODA의 안건의 적정한 형성을 확보한다. 또, 평가단계에서도 제3자의 관여의 방법을 검토한다.

3) 기존의 원조방법의 개선

① 환경·기후변동대책 무상자금협력의 창설

환경·기후변동 분야에서 뛰어난 일본의 기술을 활용해야한다는 국내외의 강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본의 기술활용을 조건으로 하여 환경·기후변동 분야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 스킴을 내세워, 환경·기후변동문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엔차관의 전략적 활용(엔차관 제도의 개혁)

가. 외화표시 차관의 검토

개발도상국의 외환 리스크 경감에 따라, 보다 매력있는 방법으로서 엔차관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외화표시 차관의 도입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한다. 그 때, 엔화표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JICA가 외환 리스크를 연계매매(hedge)하는 구조의 정비를 도모하면서, 외환 리스크 경감 니즈가 가장 높은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나. 중진국을 위한 엔차관의 대상분야의 확대

현행제도상, 아프리카를 제외한 중진국을 위한 엔차관의 대상분야는,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간주되는 「환경(기후변동대상 엔차관을 포함)」, 「인재육성」, 「방재·재해대책」, 「격차시정」의 4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중진국에 관해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대책 및 현장 니즈에 비추어보아, 「광역인프라」 및 「농업」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른 지역의 중진국에 대해서도, 외교정책이나 수요에 따라 검토한다.

다. 패키지·인프라 지원에 대한 노력

엔차관을 활용했던 인프라 지원안건 중에 기술협력 등을 넣어, 하나로 차입국가에 작용함으로써, 인프라 정비지원의 당초에서 해당 인프

라의 운영이나 이를 둘러싼 환경의 정비(제도, 인재육성 등)를 포함했던 패키지·인프라 지원에 힘쓴다.

라. ODA 졸업 이행국을 위한 엔차관의 도입

현행 제도상, 중진국을 넘어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엔차관 공여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협력이 중심이다. 한편, 이러한 ODA 졸업 이행국¹⁶⁾에게도 계속하여 엔차관에 의한 지원 니즈가 있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실시하기 위하여, 또 이러한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계속하여 도모해가는 관점에서 ODA 졸업 이행국에 대한 엔차관 공여를 검토한다.

③ 커뮤니티 개발의 지원 강화

커뮤니티 개발 무상자금협력에서의 소프트면(예를 들면, 학교를 세운다면, 이에 더불어 교원의 확보나 연수 등의 인재육성 등)에서의 지원을 충실하게 하고, NGO의 참가를 촉진한다. 이에 따라, 기재·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커뮤니티의 자립적인 발전을 지원한다.

④ 문화교류사업과의 관계

문화무상자금협력에 대하여, 개발협력의 이념 및 중점분야도 바탕으로 하여, 향후 바람직한 양상을 재검토한다. 또 국제교류기금 일본어 전문가 파견사업과 JICA에 의한 일본어 교육 보란티어 파견사업 등의 제후 강화에 노력한다.

16) 중진국을 넘어선 국가(세계의 용자 가이드라인(2008년)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 6,726 달러 이상이고 또 DAC에서 ODA 대상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국가).

4) 원조실시 프로세스의 개선

① 엔차관의 프로세스의 신속화

엔차관 프로세스의 지연은, 차입국 측이 절차(조달절차, 환경사회배려의 확보를 위한 절차 등)에 익숙치 않다는 것이 큰 요인의 하나로 되어 있다. 프로세스의 신속화를 위해, 차입국 정부의 능력향상 지원의 강화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노력을 실시하고, JICA가 안전형성(사전조사)에 관여하는 안전 가운데, 사전조사 개시에서 공사개시 까지 7년 이상 걸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의 반감을 목표로 한다.

- a. 환경사회배려에 대한 JICA 연수 코스·참가자 수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으로, 차입국 실시기관 관계자에 대한 계발강화를 하여, 환경사회배려의 착실한 실시를 지원한다.
- b. STEP(본국 기술활용)안전에 대하여, 협력 준비조사(feasibility 조사)를 실시하는 컨설턴트의 계약에 상세설계·입찰도서작성 업무를 옵션으로 포함함으로써, 컨설턴트 조달에 필요로 하는 시간을 단축한다.
- c. 지금까지 2개국으로 실시되어 왔던 JICA와 차입국 실시기관, 일본 및 차입국 정부 관계자가 참가하는 현지 모니터링 회의를, 향후 11개국으로 확대하여(엔차관 실시중 안전의 8할을 커버),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안전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d. 조기단계에서 안전실시에 관계되는 관심표명을 실시하여, 신속한 안전형성·공여검토·실시를 촉진한다.

② 불필요한 것의 배제와 경쟁성의 향상(기업의 사업참가 촉진을 포함)

- a. ODA에 관한 유사사업의 중복을 배제한다((재)국제협력추진협회(APIC)에 위탁했던 국제협력 프라자 사업의 폐지 등). 그리고 나서, 정

말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의 경쟁성을 최대한 높인 뒤 실시하도록 끊임없는 개선을 도모한다(계약감사위원회에 의한 JICA계약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일반경쟁 입찰의 확대 등).

b. ODA의 개발효과를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입찰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는 소형안건을 피하고, 안건규모를 적정화한다. 또,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경비를 시행적으로 도입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기업의 참가촉진을 도모하고 계약의 경쟁성을 높인다.

c. 개별안건마다 사양·설비의 합리화나 구조의 재검토 등에 따른 코스트 삭감 노력(2008년도는 2.9% (13.1억엔)의 코스트 삭감을 달성)을 계속하여, 불필요한 것을 배제한다. 본년도는 9%의 코스트 삭감을 목표로 한다.

③ 사업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노력 강화

a. 새로운 JICA 환경사회배려 가이드라인(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착실하게 실시해 간다.

b. 「ODA의 부정부패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검토회」¹⁷⁾의 제언(2009년 9월 공표. 상대 정부에 대한 기술지원의 강화, 기업에 대한 기업률 준수(compliance) 강화의 노력, 기업에 대한 조치규정의 개정 등)을 실시하고, 실시상황을 본년도 가을을 목표로 공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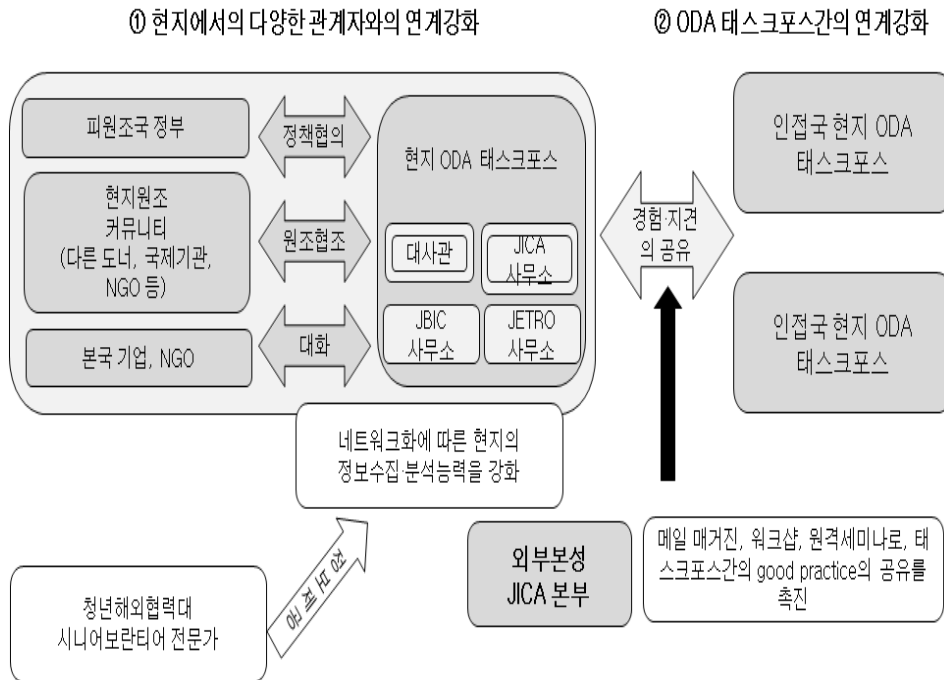
④ 현장주의의 강화

현지 정세를 바탕으로 한 개발니즈 분석이나 실태파악에 근거로 하여 효과적인 원조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80의 현지 ODA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대사관이 중심이 되어 현지의 JICA 사무소를 비

17) ODA 사업을 둘러싼 PCI사의 부정사건을 바탕으로, 비슷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1년 6월에 설치된 외부 유식자로 구성된 검토회이다.

못하여, JETRO, JIBC 각 사무소 등과 하나가되어 개발 니즈의 파악, 현지 원조 커뮤니티와의 제휴, 현지 일본기업·NGO 등과의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활동의 레벨은 차이가 보이는 등, 각각의 태스크포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견·경험·성공사례의 공유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의 정보·지견을 최대한 활용하여 질이 높은 정보의 수집·분석을 실시하고 또 기타 태스크포스의 지견·경험이 공유되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현장주의를 강화한다.

- a. 현재 9개국에 배치되어 있는 경제협력조사원을 확충하는 등, 보란티어·전문가 등이 현장에서 가지는 정보·지견의 현지 ODA 태스크포스와의 공유를 강화하고, 현지 ODA 태스크포스의 정보수습·분석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되는 구조를 만든다.
- b. 현지 ODA 태스크포스와 현지 일본기업이나 NGO와의 워크숍의 개최빈도를 높여, 대화·정보수습(기업의 CSR 활동 및 NGO의 사업과의 연계 아이디어를 포함한다)을 강화한다(네트워크화의 추진).
- c. 지역 또는 인접국가의 복수의 현지 ODA 태스크포스에 의한 정보공유의 장을 설치하여, 지역별·과제별로 ODA 태스크포스간의 정보·지견을 공유한다. 이러한 횡단적인 연계강화에 의해 성공사례나 지견을 적절하게 공유 및 활용한다.
- d. 중점국가에서는 인재와 자원의 중점적인 배분을 추진한다.



2. 시행사례 - 법정비지원사업 분야

JICA와 일본 법무성이 실시하는 법제도정비지원 관련사업의 효과적인 실시와 일본의 ODA 스킴에 의한 지적지원·협력의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정부개발원조의 한 방법으로서 「법제도정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1월 제13회 해외경제협력회의에서, 법제도정비지원을 경제협력의 중요분야의 한 부분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입법지원이나 제도정비지원을 행하는 법제도정비지원은,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에 근거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을 지원하는 것임과 동시에, 일본이 미래에 국가사회에서 명예가 있는 지위를 유지해가기 위한 유효한 루트로, 전략적인 지원을 전개해 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개발원조(ODA)대강,

ODA중기정책 등에 근거로 하여, (1)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관의 공유에 의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법의 지배의 정착, (2)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정비 및 글로벌한 룰의 준수의 확보, (3) 일본의 경험·제도의 공유, 일본과의 경제제휴 강화 등의 관점에서, 기본법 및 경제법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법제도정비지원을 실시하기로 한다. 또, 기술협력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얼굴이 보이는 원조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 기대된다.

일본의 법정비지원은, 법무성의 법무종합연구소 내에, 법정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2001년 4월에 국제협력부가 설치되었다. 국제협력부가 관여하는 법정비지원활동의 대부분은 ODA의 일환으로서, 개인,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의 직능단체나 NGO, 대학교, 정부기관, 국제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국간 프로젝트로서 실시되는 것의 대부분은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국제약속에 근거로 하여 실시하는 기술협력, 즉 공적개발원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대상국은, 베트남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상대국의 카운터파트 기관과 대화·조정을 추진하면서, 상대국의 문화나 역사, 발전단계, 자주성(ownership)을 존중하며, 국가의 실정·니즈에 적합한 법제도지원을 지원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또, 법의 기초·개정에 그치지 않고, 법이 적절하게 운명 및 집행되기 위한 기반정비, 법조의 인재육성이나 법학교육까지를 시야에 넣어 상대국 자신들에 의한 법의 운용까지를 전망한 지원을 행하고 있다는 특색도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특색을 살리면서 상대국의 니즈·안건에 따라 전문가의 파견, 학자나 법률실무가를 중심으로 한 국내조직으로부터의 서포트, 방일연수,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편성하고, 또 유기적으로 제휴시켜 유연하고 균형이 좋은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

한다.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파견되는 전문가는 물론, 법제도정비지원에 힘쓰는데 적당한 인재를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인재의 활용과 육성을 위한 기반정비를 도모한다. 또, 구체적인 지원방침의 책정·실시 등에서는 관계부처의 제휴는 물론, 일본변호사연합회, 경제단체등 관계자간의 관민제휴가 불가결하기 때문에, 향후 All Japan에 의한 지원체제를 강화해 간다. 또, 일본의 원조 리소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다른 도너(donor)와의 역할분담에도 유의하며, 연구기관과도 제휴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을 실시한다.

또, ODA 대강에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시아는 중점지역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시아는 ODA의 중점지역이다. 일본도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와는 역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관계가 깊으며 공통된 문화적 기반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아시아 여러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법제도정비지원의 실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지원 실적, 일본 입장에서의 외교면 및 경제면에서의 중요성, 피원조 국가의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또, 특히 기본법 분야에 대한 지원은 그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기반정비의 근간 부분으로, 상대국의 역사나 문화, 생활습관에 깊게 뿌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사항에서 일본과의 공통성·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법체계의 동질성 등도 고려한다.

이 법정비지원은 중국,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의 7개국을 중심으로 추진해 가는 것으로 한다. 이 7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 실시방침을 정하여 노력 중이며, 또, 향후 민

주화의 촉진, 법의 지배의 정착, 평화구축지원 등의 관점에서 7개국 이외의 아시아 여러 국가나 아프리카 여러 국가 등에 대해서도, 상대국의 니즈나 필요에 따라서 지원의 수요를 더욱 이해해 나가기로 한다.

3. 평 가

ODA를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시상황이나 그 효과를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평가로 얻은 결과는 ODA 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써 ODA가 어떻게 사용되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할 책임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ODA의 투명성을 높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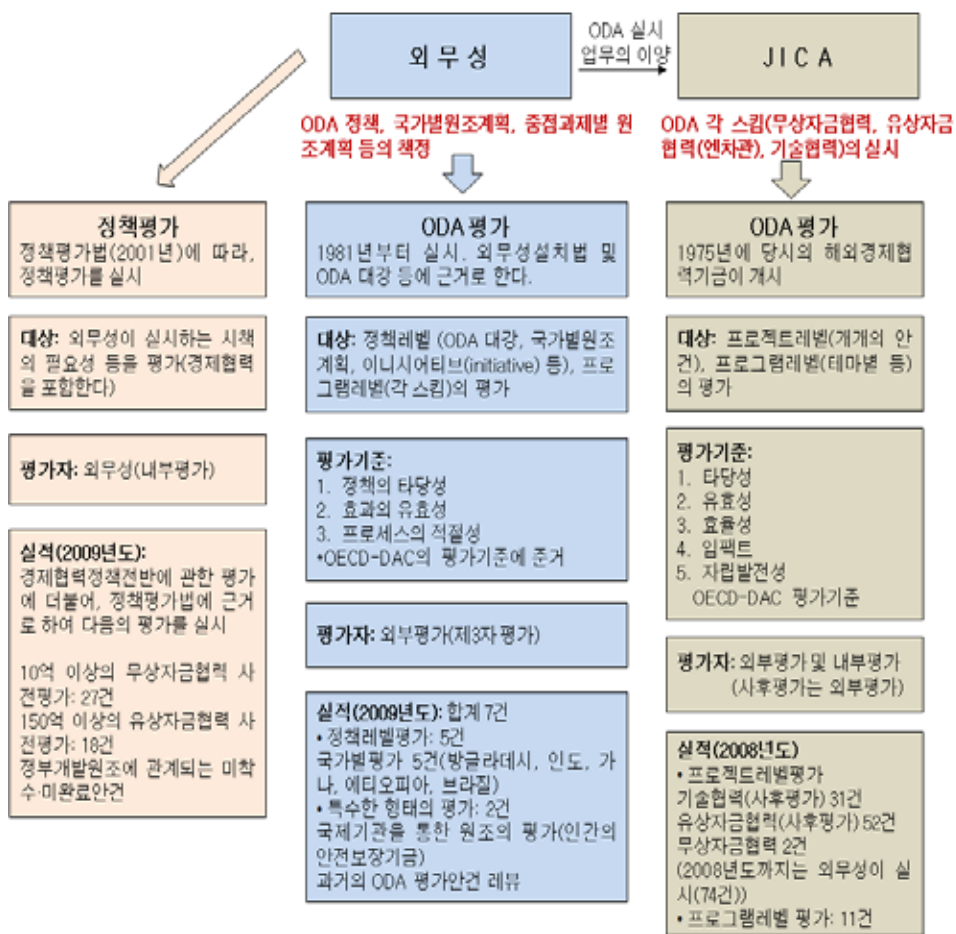
ODA평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ODA는 개발도상국의 지원에 사용되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로 얻은 교훈이나 제언을 활용하여 ODA 사업을 보다 양질의 것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다. 이를 피드백이라고 한다.

또, ODA평가에는 실시하는 시기에 따라,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의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 이전에는 프로젝트 종료 후에 실시하는 사후평가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프로젝트의 지침이 되는 사전평가(assessment)도 중요시되고 있다. 또 ODA는 실시하는 개발도상국의 조건의 악화 등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사업의 도중에 평가를 실시하여 수정사항을 확인하는 중간평가도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ODA 평가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관계자가 실시하는 「내부평가」와, 프로젝트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실시하는 「외부평가」가 있다. 물론 양자를 믹스한 평가도 있다. 구체적으로

는 JICA의 경우, 프로젝트가 소규모로 수가 많기 때문에, 내부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의 유식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확인하는 2차 평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JBIC의 경우는, 사업규모가 비교적 크고 수도 적기 때문에, 외부평가로 실시한다. 이 경우도 외부의 유식자도 참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리뷰를 실시한다.

<일본의 ODA 평가 구조18)>



18)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gaiko/oda/kaikaku/hyoka/shurui.html>

일본 ODA 평가의 특징은, 외무성이 개별사업의 평가를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정책 레벨·분야(프로젝트) 레벨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책레벨에서는 ODA를 공여하고 있는 주요 국가에 대하여 5개년마다 「국가별 원조계획」을 작성하여, 5년 후에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의 평가를 실시한다. 분야 레벨의 평가는 보건·위생 등, 빈곤사감 등 큰 분야로 나누어, 그 분야마다 일본의 원조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매우 큰 테마를 다루기 때문에, 「ODA평가 유식자회의」에 평가를 위탁하고 있다. 이 ODA평가 유식자회의는, 2003년 10월 경제협력국장(현 국제협력국장)의 간담회로서 외부의 학식경험자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제3자 평가의 실시, 1) ODA평가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제언, 조언, 2) ODA 평가 가이드라인 책정에 대한 조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제 5 장 시사점

1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대부분의 국가들의 대외원조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원조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원조형태 및 대상, 시행기관의 역할과 위상, 중점 지원국 및 지원 분야, 민간단체 지원 및 자문기관 등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법도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외원조에 관하여 방대하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OECD DAC 회원국의 경험과 사례를 볼 때, 국가마다 다양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원조선진국들은 ODA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문화된 법적 체제 혹은 정책문서를 갖추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원조정책의 주요 방향과 원칙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의 법률을 살펴보면 빈곤, 지속적인 개발, 복지 등과 같은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대외원조법도 이러한 경향과 일치한다.

원조정책의 안정적인 운용과 일관성 확보, ODA 규모 확대에 대비한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확충이 필요한데, 그러한 대책 중에 하나가 의회 승인을 받는 대외원조 관련 법률- 또는 개발협력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 공여국의 경험과 사례를 살펴보다도 그렇다.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할 당시 ODA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를 받았다. DAC의 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DAC는 “대외원조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대외원조를 실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의 기본이념, 목적, 추진전략, 기본계획 및 정책수립·집행, 평가 등의 추진시스템, 부처간 협의·조정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10년 1월 25일 제정되어 금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은 공공부문의 공적개발원조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국제개발활동을 포괄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에 의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 기구는 대통령 직속기구도 아니고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도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직되었다. 국무총리는 ODA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단순히 부처간조정기능에 그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외원조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미국의 대외원조법처럼 방대하고 포괄적인 법률이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의회와 행정부의 협력과 견제, 그리고 조정을 통하여 ODA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의 법률 내용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법률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1) 일관된 집행체제의 완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공적개발원조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국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7조에서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을 그 소속위원으로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그 위원장을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국무총리(실)로 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부서간 단순 기능 조정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기에, 목적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상원조는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무상원조는 국제협력단이 담당하여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는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각각 주관하도록 하여 여전히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ODA정책은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를 비롯하여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 등 일관적으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정책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보다 통일적이며 일관적인 장기 전략의 형성을 위해 USAID가 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에 비춰봤을 때 한국의 경우도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보다 전문성을 띠는 영속적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USAID와 같은 대외원조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DAC 회원국 22개국 중 18개국이 실질적으로 외교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최근에 일본도 2008년 10월 새로운 JICA로 일원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ODA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하고 ODA의 정책입안과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원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비구속성 원조

비구속성 원조는 구속성 원조(tied aid)에 비해 피원조국에 더욱 효과적인 원조가 되는데, 이는 첫째 피원조국이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평균적으로 비용을 15%-30%까지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둘째 피원조국에게 가장 필요한 물자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피원조국 필요 중심적이며 이는 피원조국의 자체적인 개발역량강화에 더욱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구속성 원조의 경우 피원조국이 원조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감독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부대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품수입의 제한 및 공여국 인력의 채용 등의 공여국 중심의 원조는 피원조국 국민의 민족성을 자극, 공여국과 피원조국간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구속성 원조는 결국 공여국의 관점에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 보다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에 아프리카에 막대한 규모의 원조를 하고 있는 중국이 현지와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구속성 원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중국에서 물자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현지에 새로운 차이나타운을 건설한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피원조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비구속성 원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현재 구속성 원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비구속성 원조를 늘리려는 추세에 있다. 특히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은 거의 모두 매년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공포하고 있으며 원조를 위한 물자 및 서비스의 최소 60% - 최대 100%를 모든 국가의 기업에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외교통상부 주관 하에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는 그 예산규모가 작아 실효적 지원이 어려운데다가 타 부처와의 연계도 부족한 상황에 있다. 이는 비구속성 원조를 강조하는 현 국제 사회의 노력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며,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비구속성 원조의 강화를 통해 공적개발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전담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성격을 원칙적으로 비구속성 원조로 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소속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부처 및 주체들을 연계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 효율적인 성과를 꾀해야 한다.

이점과 관련하여 미국은 현재 모든 기술적 협력을 비구속성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양자간 원조도 비구속성 원조이다. 한국형 공적개발원조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서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을 비롯한 ODA 선진국들의 노력을 본받아 특히 개발경험의 전수를 비구속성화할 필요가 있다.

(3)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원조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그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자국의 발전 및 복지가 아닌 타국의 개발을 지원해주는 공적개발원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반발을 살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기업이나 비정부기구 등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은 매우 절실한데,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업무의 성격이 겹치거나 충돌하여 발생하는 원조 수행주체들 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 공적개발원조 수행 상 정책 타당성의 평가가 올바르게 이뤄지고 있는지 비리가 있지는 않은 지 등 견제를 통한 올바른 원조 수행의 담보를 위해서도 대중인식의 제고를 공적개발원조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인식 제고 정책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동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공적개발원조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근거한 한국의 대중인식 제고 정책은 아직 단순한 정보 공개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이며 보다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국민 인식 제고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과 의사소통을 통해 ODA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양자간 원조의 18%를 NGO를 통해 실행하는 등 NGO 와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평화봉사단 운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미국정부도 개발협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DAC로부터 받았다. 이와 같이 미국정부도 국민 대중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관성 있고 적절히 확보된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개발에 대한 인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인 USAID는 미국의 대외 원조가 어떻게 하면 민주적이고 잘 통치된 국가로서 국민의 필요에 반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대응을 해오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연방예산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원조는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일 뿐 아니라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루어왔다. 그 배경에는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 두 가지 중요한 경향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의 대외원조계획 규모를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잘못 인식

하고 있는 점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 미국인이 불행한 나라들에게 적당한 원조를 하여 미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민대중의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사회단체와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소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ODA의 성공을 위해서 1) 내부그룹(민간 종사자, 현지 직원, 대외서비스 직원), 2) 이해관계자들(의회, 비정부 단체, 민간단체, 씽크 탱크, 계약자, 정책 연구소), 3) 수혜국 및 그 시민들 로 나누어 ODA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 내부그룹에 대해서는 향상된 USAID 활동에 관한 메시지, 더 효과적인 정부 원조, 개발협력 사업 모델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에 관한 메시지, 현장에서 원조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 개발, 자국에서 대외원조에 대한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내는 것 등이 필요하고, 수혜국 및 그 시민들에게는 공여국의 원조가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메시지, 정부가 더 책임 있게 행동함으로써 대중의 인식을 끌어올리기,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혜국을 도와줌으로써 원조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 등이 요구된다.

(4) 민간부문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

정부차원의 개발원조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국제사회 개발 협력까지 포괄하는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차원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민간부분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NGO 단체수도 증가하고 활동량도 배가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ODA 활동에 있어서 NGO 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체계적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2008년 현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수는 62개,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단체 수가 90여개이다.

국제개발협력 NGO의 활동분야도 단순한 빈곤퇴치, 경제개발 뿐만 아니라 인권, 평화, 개발, 환경, 보건, 교육 등 다양화 되고 있다. 일반적인 NGO 활동 지원에 관한 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등이 있으나 국내 일반 NGO 활동 지원에 관한 법이며, 국제개발협력 NGO 활동 지원에 대하여 특화하여 법률로 제정된 것은 없다. 이에 비하여, ODA 선진국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NGO 활동 지원에 대하여 법제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기본법으로 대외원조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국제개발협력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ct)을 시행하고 있고, 스페인의 경우 기본법으로 ‘개발문제에서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공공서비스 조정 및 의무 이행법(Public Service Rearrangement and Transfer of Duties Act)이 있다.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NGO)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NGO의 활동 조직, 예산, 사업 프로그램, 체계적 교육 및 인재 POOL 구축 및 정책입안과정 등에 NGO의 참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NGO들의 좋은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ODA 정책 수행에 있어서 선진 외국에 비해 국제개발협력 NGO들의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저하로 연결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아주 일반적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인데, 국제개발협력 NGO

의 증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칭) 「국제개발협력 NGO의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개발협력 NGO의 제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개발협력 NGO들의 활동에 대한 조직적 지원, 예산·사업 프로그램 지원, 체계적 교육 및 인재 POOL 구축, 정책입안과정 등에 NGO의 참여 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피원조국의 주인의식의 배양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원조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경제적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개발도상국과의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공적 개발원조가 자리 잡아야 한다.

만에 하나, 공적개발원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거나 개발도상국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하거나 또는 제국주의적 경제진출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해당국가 국민들의 반발만 사기 쉽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과 공적원조는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진실한 협력파트너가 되도록 시행해야 할 것이다.

2. 평가체계의 시사점

미국은 ODA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ADS(The Automated Directives System) 203장(Chapter)을 마련하여 USAID 운영 단위 기관들(USAID 사업단들(Missions), 지역 플랫폼(Regional Platforms), 워싱턴의 여러 국(局)과 실(室)(Washington Bureaus and Offices))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계획된 성과를 잘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USAID

의 실행과 기준에 관해 지침(guidance)을 제공하고 있다. ADS 203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AO팀(Team)은 성과를 관리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어떻게 양적 및 질적 이행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2) 계획한 개발 성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교육을 장려하고 장래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행감시와 평가의 도구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3) Portfolio Reviews, 미국 정부의 연례 공동 운영계획(OP), 미국정부의 연례 공동 이행보고서 등과 같은 과정들을 USAID 및 그 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AO를 평가하고 이행 분석 및 교육에 기여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4) 목표한 성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나타난 진보(progress)를 제한하는 요소들과 목표한 성과의 달성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의 종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5) USAID는 어떻게 USAID 내에서 배운 교훈을 미국 정부의 대외문제 다루는 기관들에게 공유하기 쉽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간단히 말하면, ADS 203장의 주요한 내용은 USAID 사업단/부서들이 사전에 AO가 달성하려고 했던 성과를 구체화한 경우에 어떻게 계획된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등 AO의 효과(impact)를 평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평가체계는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DS 203장에는 이행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이행관리계획(PMP), 이행관리계획을 위한 이행지표, 평가계획수립에서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문서,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파리선언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는데, 파리선언의 내용을 충족하고 더욱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ODA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못지않게 평가제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ODA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평가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다. 우

리나라가 앞으로 ODA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미국의 평가체계를 참조할 가치가 있다. 미국의 ADS와 같은 평가지침 또는 평가메뉴얼을 만들어 ODA에 관여하는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이에 따라 이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에 필요한 이행지표를 만들어 개발협력사업의 전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법제적 차원에서는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령, 특히 기본법에 해당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시사해준다.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의 기본법 「벨기에 국제협력법」에 대비되는 한국의 법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다. 동 법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국의 유·무상원조를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각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추상적인 것이 많아 그 제정목적인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적인 달성에 있어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벨기에 국제협력법」은 목표와 원칙을 비롯하여 동반자 국가를 포함한 개발협력 동반자들의 선정 및 개발협력의 타당성 평가지침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벨기에의 구체적인 법제는 수혜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벨기에는 공적개발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지양함으로써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

여왔다. 한국은 벨기에의 법제를 참고하여 공적개발원조 수행 상의 목표와 협력대상국의 선정 기준, 그리고 공적개발원조 평가제도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정책적 차원에서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체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는 전략을 취할 것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은 포괄적인 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기존에 각각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의 주관 하에 유상원조, 무상원조로 나뉘어 수행되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통일적인 정책이 결여되어 있어 각 주체의 개별적인 정책들이 중첩되거나 충돌, 그 효과가 반감될 여지가 많았는데, 이제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 모두를 그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칫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부서간 단순기능조정에만 그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혁신과정에 있어서 벨기에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개혁은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개발원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벨기에의 2007년 조화와 일치 계획을 비롯한 구체적인 노력들, 특히 전문적이며 영속적인 전담기구인 개발협력총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 추구 등은 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재원이 아직 많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할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벨기에의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강점에 주목하여, 첫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를 벨기에 개발협력총국과 같은 전문적이며 영속적인 전담기구로 삼아 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추구하고, 또한 장기적 차원의 원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수혜국의 자체개발역량강화에 기여하는 비구속성 원조의 증대와 국민의 공적개발원조 인식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현재 스웨덴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은, 2003년에 국회에서 채택되었던 법률 ‘책임의 분담 - 스웨덴의 국제협력개발에 대한 정책’에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입법화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그다지 주목을 모으지 못했던 정책도 포함하여, 스웨덴이 추진하는 원조정책이 개발도상국 빈곤층의 놓여진 상황에 큰 변화를 초래해 왔다는 정책담당자의 인식향상이 있다.¹⁹⁾ 국제개발정책은, 개발원조를 실시하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정부 전체가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과제라고 스웨덴은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정책담당자의 인식향상에 의해 입법이 이루어 졌지만, 국제개발정책에 대한 국가 전체, 정부 전체가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과제라고 스웨덴의 입법정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9) Government Bill 2002/03:122. Committee Report 2003/04:UU3, Parliamentary communication 2003/04:112

2.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스웨덴은 자국의 이득과는 상관없이 매년 예산의 상당부분을 국제 사회를 위해 할애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가 2006년도에 ODA 부문에 지출한 예산은 약 40억 달러로 GDI(국민총소득)의 1.03%에 달했다. 2009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을 위시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ODA 비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정책과 전략 또한 분명하다.

스웨덴은 국제적인 원조 활동을 위해 외무부 소속으로 원조 장관이 따로 배치돼 있다. 또한 외무부 산하에 SIDA(국제 발전 협력 기구) 라는 조직을 두고 ODA 및 유사 원조 프로그램을 관장하게 하고 있다.

SIDA 스스로 규정한 이 조직의 역할은 수원 대상 및 내용의 분석, 수원국과의 대화, 그리고 재정 지원이라는 세 가지다.

SIDA는 또한 원활한 정보 교환 및 합리적인 원조 활동을 위하여 국내 13개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국제 협력 NGO 단체를 비롯해 사무직 및 공무원 노조, 팔메 센터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사무직 및 공무원 노조는 수원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 조합의 설립부터 단체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지원과 자문을 아끼지 않는다.

지원 사업 결정 과정은 총 7단계로, 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 단계까지는 약 10개월이 소요된다. 접수된 원조 신청서가 정부에서 정한 국제 협력 기준을 통과하면 수원 대상국 혹은 기관과의 대화가 첫 수순으로 잡힌다. 이는 2005년 파리 성명에 의거하여 수원국의 상황과 필요에 상응하는 원조를 실행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원조 신청서의 최종 심사가 끝이 나면, 사업 발주는 SIDA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지되며, 투명한 공개 입찰을 통하여 수주 기업이 결정된다.

한국이 아직도 수원국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급조된 선심성 원조나 국내 대기업의 해외 사업을 위한 구속성 원조(공여국 기업이 사업을 수주한다는 조건성 원조)를 고집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²⁰⁾

4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해 오스트리아의 법제가 시사해 주는 것은 결국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오스트리아 협력대상국 자체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규정, 그리고 기금지원의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할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와 연방개발협력법은 제4조 제2항에서 연방정부는 “개발 협력을 집행하는 때에 개발도상국의 행정 및 사업 시행역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그 결과 해당 국가 내 시민사회의 구조와 공공의 구조를 강화한다.”고 하며 개발에 있어서 협력 대상국의 행정 및 사업 시행역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오스트리아는 여러 정책과 전략에 개발역량의 강화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오스트리아개발청은 2005년부터 이를 위한 질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생각건대, 동반자 국가 자체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의 도입 등 오스트리아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노력들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법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은 제20조에서 5항에 걸쳐 기금지원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1항은 오스트리아개발청이

2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70510112740.

기금지원을 제공할 경우에는 기금신청자와 기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협정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법제는 기금지원을 비롯한 원조 전반에 대해 그 수행상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체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는 전략을 취할 것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은 포괄적인 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무총리(실)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칫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부서간 단순기능조정에만 그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공적원조에 대한 평가체제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 공적원조의 평가가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i) 경험을 통한 학습, ii) 투명성, iii) 이해의 심화, iv) 소통의 개선은 한국의 공적원조에 대한 평가 체제 설립에서 있어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지향점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가 추구하는 인권 중심적 개발협력 사업 개발 모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전략 수립시 참고한다면 인권 친화적 공적원조 모델을 한국도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파악된다.

5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일본의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법(JICA법)」JICA가 기술협력, 유상 자금협력, 무상 자금협력의 세 가지 원조방법을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법문화 하여, ODA수행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즉, ODA 실시부문에서도 ODA 개혁을 실현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ODA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신 JICA가 JBIC에서 유상자금협력업무를, 외무성에서 무상자금협력 일부의 실시업무를 각각 계승하여, 일본 ODA의 모든 방법, 즉, 기술협력, 유상자금협력 및 무상자금협력을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ODA 수행관련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수행기관을 구별한 것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신 JICA의 발족을 위해, 다양한 준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개혁은 단순히 조직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무성과 실시기관 사이의 역할분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원조업무의 방법을 대담하게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제적 측면에서의 이러한 다양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첫째, 일본의 경우, 종전의 ODA 관련 업무는 「무상자금 협력업무」는 「외무성」이 담당하고, 「기술 협력」은 「JICA」가 담당하는 대신 「유상자금 협력(엔화 차관) 업무」 「JBIC(국제협력은행)」가 담당하는 「2원화 체제」로 운영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무상자금 협력업무」는 「재경부」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기술 협

력」 및 「유상자금 협력(차관)업무」는 「KOICA」의 소관으로 되어 「2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ODA 업무가 2원화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소관 부처 간에 상호유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점을 보완하고자 ODA업무 소관기관을 일원화하였다. 다시 말해서 JBIC의 해외경제협력업무와 외무성의 무상 자금협력업무(외교정책상 외무성이 직접 실시하는 것은 제외)가 JICA에 흡수되어 2008. 10. 1.에 「신 JICA」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2원화 체제가 소관부처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업무협조에 혹시 허들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 만일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일본과 같이 ODA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ODA 후발주자인 탓에 일본의 ODA지원 대상국이 상당수 중첩된다. 다시 말해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선발주자인 일본과 경쟁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ODA수혜국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ODA지원활동과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ODA지원활동의 일환으로서 법정비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ODA의 사정거리가 아직 법정비지원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경우 아직도 현대적인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법은 정비되어 있더라도 원만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국가에 대한 법정비지원은 유형의 물질적인 지원이 상으로 효과적인 때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일본의 ODA지원활동의 특징을 보면, 수혜국에 대해 일본적 시스템이나 법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수혜국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수혜국에 대해 자기 나라의 법제도 등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려 하거나 권장하는 유럽의 국가들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관습 및 법제도가 다른 나라에 대해 ODA지원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 6 장 결 론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10년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ODA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2010년 7월 시행),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체계를 구축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ODA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강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다각도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첫째, 법제적 차원에서 대외원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대외원조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원조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원조형태 및 대상, 시행기관의 역할과 위상, 중점 지원국 및 지원 분야, 민간단체 지원 및 자문기관 등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추상적인 내용의 규정으로 해석의 여지가 많다. 물론 이러한 세부적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황과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의회와 행정부의 협력과 견제, 그리고 조정을 통하여 ODA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 수행상의 목표와 협력대상국의 선정 기준, 공적개발원조의 평가제도를 더욱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수행기관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적으로는 미국의 USAID 등과 같은 대외원조전담기구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간부문의 참여에 대한 지원 제도와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NGO 등과 같은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제개발협력 NGO 활동 지원에 대한 특화된 법률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법으로 대외원조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국제개발협력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ct)을 시행하고 있고, 스페인의 경우 기본법으로 ‘개발문제에서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공공서비스 조정 및 의무 이행법(Public Service Rearrangement and Transfer of Duties Act)이 있다. 이러한 법제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ODA 평가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우선, 오스트리아 공적원조의 평가의 세부목적을 ① 경험을 통한 학습, ② 투명성, ③ 이해의 심화, ④ 소통의 개선을 그 지향점으로 하고, 평가체계를 세밀화하여 이행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이행관리계획(PMP), 이행관리계획을 위한 이행지표, 평가계획수립에서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문서,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 등으로 세부적인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평가지침 또는 평가메뉴얼을 만들어 ODA에 관여하는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이에 따라 이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에 필요한 이행지표를 만들어 개발협력사업의 전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박기갑, 벨기에의 ODA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박병도, 미국의 ODA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이경희, 스웨덴의 ODA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이 정, 일본의 ODA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정경수, 오스트리아 ODA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박변순 외, “국격 제고를 위한 ODA정책”,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9.11.
- 양효령, “중국의 정부개발원조 법제 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ODA법제 관련 전문가회의 발표문, 2010.5.14.
- 桂井太郎, カナダの新開発協力政策『誇りを持って世界に与える影響力』, 開発金融研究所報 第27号, 2005.11.
- 大芝 亮, “主要先進国の動向(2)”, 主要先進国における海外援助の制度と動向に関する調査, ODA 研究会, 2008.
- 松隈 潤, “主要先進国の動向(1)”, 主要先進国における海外援助の制度と動向に関する調査, ODA 研究会, 2008.
- 秋月 弘子, “開発援助政策の国際的動向”, 主要先進国における海外援助の制度と動向に関する調査, ODA 研究会, 2008.
- 海外職業訓練協会, 主要先進国における人材養成分野の国際協力施策調査報告書, 海外職業訓練協会, 2009.
- 參議院, 參議院政府開發援助(ODA)調査, 參議院, 2010.

참 고 문 헌

DFID, Annual Report 2007.

Eliminating world poverty, making governance work for the poor, 2007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6, OECD, 2006.

http://www.odakorea.go.kr/html/intro/summary_2.php?&bid=a3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126800020>.

<http://www.oecd-ilibrary.org/sites/dcr-2010-en/08/02/20/index.html?contentType=/ns/Chapter&itemId=/content/chapter/dcr-2010-31-en&containerItemId=/content/serial/20747721&accessItemIds=&mimeType=text/html>.

http://www.jica.go.jp/world/interdependence/jica_databook/11/.

http://www.jica.go.jp/world/interdependence/jica_databook/12/.

<http://www.tvac.or.jp/di/17874.html>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wedish Policies to Combat Climate Change”, 2007.

<http://www.mofa.go.jp/mofaj/gaiko/oda/kaikaku/hyoka/shurui.html>.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70510112740.

<http://www.tvac.or.jp/di/17874.html>

http://ko.wikipedia.org/wiki/%ED%95%A9%EC%8A%A4%EB%B6%80%EB%A5%B4%ED%81%AC_%EC%99%95%EA%B0%80

<http://www.acdi-cida.gc.ca/index-e.htm>